방위사업관리규정



[시행 2024. 7. 11.] [방위사업청훈령 제864호, 2024. 7. 11., 일부개정]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과), 02-2079-6314

제1장 총 칙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위사업법」・「방위사업법 시행령」・「방위사업법 시행규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이라 한다)
-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 ② 이 규정 중에「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관 외에 다음 각호의 기관에도 적용한다.
- 1.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 3.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규정은 방위사업에 관하여 청의 다른 훈령 및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방위력개선사업비에 대한 계약체결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국과연 자체규정을 포함한다)에 별도의 내용이 없는 한「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적용한다.
- ③ 방위력개선사업비 중 상용품 구매와 전력운영사업비의 중앙조달에 관하여는「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적용한다.
- ④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는 한「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 ⑤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 및 통합체계지원요소 등 총수명주기관리 업무에 관하여서는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 리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삭 제>

- 제5조(사업추진 관련 문서 유지·관리) ① 사업주관부서는 사업추진 관련 주요 의사결정 문서를 사업관리이력서 개념으로 작성하여 유지·관리하되, 선행연구 단계부터 사업종료 시까지의 제반경과, 조치사항, 사업담당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관부서는 비밀문서를 제외한 입력 가능한 사업추진 관련 모든 문서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유지·활용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사업관리이력서는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카드류에 준하여 관리한다.
 - ③ 사업추진 관련문서는 사업종료 보고 후 보조매체에 전자화하여 영구보존하고, 문서는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한다. 다만,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해 유지되는 사업추진 관련문서는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을 따른다.
- 제6조(방위사업감독)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영 제12조의2 및「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검증, 계약·협약 승인 및 정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 ② 방위사업 감독업무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 감독규정」에서 정한다.
- **제6조의2(보안과제)** 이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 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의 보안과제로 분류한다.

제2절 방위사업수행의 기본원칙

- 제7조(통합사업관리 등) ①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의하여 단위사업별로 통합사업 관리팀을 구성·운영하는 통합사업관리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선행연구를 실시하며, 소요군 및 관련기관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 ③ 무기체계의 특성, 사업규모, 탑재장비여부,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 일부를 생략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④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ㆍ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의사결정기구, 사업추진기본전략에서 정한 회의체, KS A ISO21500(프로젝트관리표준)에 의한 절차ㆍ기준의 적용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연구개발의 확대, 방산육성 및 국산화) ①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개 발을 활성화하고 국산화와 민·군겸용 기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국산화관련 업무 기준 및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 ③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 개발비용의 절감 및 개발기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이하 "M&S"라 한다), 가상시험 등을 확대한다.
- ④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제반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방위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체제 유지를 강화한다.
- **제9조(국방과학기술의 증진)** ① 국방과학기술의 증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종합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을 추진하고 핵심기술의 개발을 장려한다.
 - ② 국방관련 기술자료의 통합관리 및 자료축적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기술보호 노력 및 대책을 마련한다.
- 제10조(합동전력발휘의 극대화)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 "이라 한다) 요구서 작성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에는 육상・해상・공중 전력에 대한 합동전력 발휘를 극대화할수 있도록 방위력개선사업 재원을 배분한다.
- **제11조(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군수품의 획득)** ① 최적의 전투력발휘를 위하여 무기체계를 적기에 경제적으로 획득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를 적기에 경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고, 업무능률 항상 및 절차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③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군수품 획득을 위하여 결정된 소요에 대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서 사업을 분리하거나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④ 군수품은 예산편성 목적 및 획득계획에 따라 국방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획득하되, 군수품획득의 경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에 의한 방식을 추구하도록 하며, 원가자료의 축적 및활용을 위한 제도를 개발한다.
 - ⑤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연구개발 및 구매의 각 단계별로 군수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품의 표준화와 관련한 세부절차는「표준화 업무규정」등, 군수품의 품질관리와 관련한 세부절차는「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등 각 관련규정을 따른다.
 - ⑥ 무기체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하여「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및「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총수명주기체계관리의 원칙을 고려한 종합군수지원요소 등을 마련한다.

제3절 소요결정 및 수정

- 제12조(무기체계 소요제기)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합참에 소요를 제기할 때에는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국과연·기품원·국기연·신속원·업체 등은 소요에 관한 의견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 ② 합참이 합동성에 기초하여 전력소요서(안) 작성을 위한 통합개념팀 구성을 결정하면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합참과 협조하여 청 관련부서(소속기관 포함)의 전문가가 통합개념팀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3조(소요검토팀 구성 및 운영)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합참의 전력소요서(안)·소요결정 관련회의 안건, 합참에 통합개념팀이 구성되는 전력,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소요에 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방위사업정책국, 기반전력사업본부·미래전력사업본부(이하 "사업본부"라 한다),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신속원, 전문연구기관 등의 인력으로 소요검토팀을 구성할 수 있다. 필요 시 소요군의 인력에 대해서도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무기체계 소요결정에 관한 의견제시 등)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합참의 전력소요서(안) 및 소요결정 관련회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별 검토의견을 근거로 합참에서 주관하는 사전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소요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별표 제 11호를 참고하여 검토한 후 사전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1. 방위사업정책국: 대체가능성, 법 제11조의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및 법 제19조의 구매 원칙과의 부합성, 합참의 상호운용성 적용 및 평가 지침 적용 여부, 소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검증결과의 타당성
 - 2. 기획조정관: 중ㆍ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재정가용성
 - 3. 방위산업진흥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ㆍ시행계획과의 부합성
 - 4. 국제협력관: 향후 수출가능성
 - 5. 국방기술보호국: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통제에 관한 정책과의 부합성
 - 6. 사업본부: 전력화시기, 작전운용능력(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및 전력화지원요소 적절성, 진화적 개발전략 적용 가능성 등
 - 7. 전문연구기관(국과연·기품원·국기연·신속원 포함): 국방과학기술 수준, 무기체계 발전추세 등에 따른 기술 적 구현가능성 및 개발가능성 등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이 중기소요 결정(전환) 시 선행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진화적 작전운용 성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합참에서 신규로 소요결정된 전력은 무기체계 특성 및 유사사업 수행사례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서 소관 사업본부를 지정하여 통보한다.
- 제15조(무기체계 소요 수정) ① 소요결정된 무기체계의 전력화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를 수정하고자 하는 청 관련부서(소속기관 포함),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및 신속원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를 종합・검토하여 합참에 소요수정을 요청한다.
 - ②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소요수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도별 물량 또는 전력화시기의 수정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부장 및 사업단장(이하 "사업부장"이라 한다)이 방위사업정책국장을 통하여 합참과 미리 협의를 한 후 중기계획 또는 예산 등과 관련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를 할 때 이를 결정하고, 해당 안건 심의결과를 합참·소요군 등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한다.
 - 2.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적・부수적 성능의 수정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른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요결정 문서의 전력화지원요소 수정에 대하여는 소요군 및 관련기관이 참여하고 해당 사업부장이 주관하는 방위사업기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 후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여부를 결정하고, 변경내용을 소요군 등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한다.
- 제16조(기술적 부수적 성능의 결정 및 수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결정된 중기소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무위원회 심의 조정 후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기술적 부수적 성능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관련기관 검토결과 중기전력소요서에 명시된 기술적 부수적 성능의 수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부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할 수 있다.
 - 1. 단위전력의 운용개념・계획을 변경시키지 않는 사항
 - 2. 작전운용성능 및 운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환경 적응성, 인체공학 기반 설계, 확장성 등 표준화 사항
 - 4. 전력화지원요소 등
 - 5. 장비 고장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주요 자체고장진단기능과 무기체계의 운용자, 탑승자, 정비자의 안전방안 등 안전 관련 사항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규모사업(총사업비 20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전운용성능 범위 내에서 비용, 성능 및 일정을 고려하여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사업 추진단계에 따라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다. 다만, 구매사업의 경우에는 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제17조(핵심기술 과제결정 등)**「혁신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의한 핵심기술 과제결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국 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따른다.

제4절 중기계획 및 예산

- 제18조(중기계획요구서 작성 원칙) 기획조정관은 영 제20조제1항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에 따라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의 우선순위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9조(중기계획요구서 작성절차) ① 기획조정관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방부로 제출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중기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무기체계의 전력화지원요소(안)을 소요군에 통보한다.
 - ②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이하 "사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한 후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 1. 소요군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수정 보완 등의 의견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2. 국과연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편성자료
- ③ 국과연은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를 반영하여 국과연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응용연구·시험개발·민군겸용 분야를 말한다)과 연구지원사업(인력운영 및 연구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한 중기계획 작성자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관리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사업본부
- 2.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국방기술보호국 (다만, 통합사업관리팀 소관 시험개발사업은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 3. 인력운영 연구시설 등 연구지원사업: 국방기술보호국
- 4. 중기계획사업비의 적정성 검증: 방위사업정책국
- ④ 기획조정관은 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중기계획요구서와 방위사업정책국·기품원·국기연 등 관련부서 및 기관에서 검토한 내용을 포함하여 중기계획요구서를 작성하며, 관련된 설명자료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국방부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제출한다.
- ⑤ 사업관리부서(기획조정관・방위사업정책국・국방기술보호국・방위산업진흥국・사업본부・국과연・기품원 ·국기연을 말한다)의 장은 F+2년도 신규 착수사업(핵심기술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시에 제출한다.
- 1. 사업목적
- 2.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내용 및 선행연구결과 등 사업추진현황
- 3.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
- 4. 연차별 투자계획
- 5.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소요 등
- 제20조(주요사업 계획보고) ①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주요사업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다만 2호, 3호, 4호의 경우에는 1호의 금액기준과 무관하게 선정한다.
 - 1. 총사업비 1조원 이상 사업(다만, 단순 반복사업, 성능개량사업, 추가 양산사업은 제외)
 - 2. 국가정책 및 외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 3. 전력증강에 따라 작전개념이 획기적으로 변경되는 사업
 - 4. 기타 대통령실과 협의된 사업
 - ②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할 구체적인 대상사업 및 보고시기는 중기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주요 의사결정사항의 보고시기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시기를 고려하여 기획조정관이 해당 사업본부, 국방부및 국가안보실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의 보고사항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최초양산계획(함정사업은 선도함 포함), 기종결정 (수의계약 구매사업 제외) 등이며 국가안보실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21조(예산편성 원칙) ① 기획조정관은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국방중기계획, 국방부의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및 기획재정부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하

여 편성한다.

- ②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예산편성은 국방중기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되,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요군의 요구에 의해 사업본부장이 편성한다. 이 때, 연도예산에 신규로 반영된 무기체계 사업에 대하여는 단가(계약가/협약가/실적가 등), 수량, 산출근거 등을 포함한 전력화지원요소(안)을 1월말까지 소요군에 통보하며 소요군은 통보받은 전력화지원요소(안), 야전운용시험·전력화평가 및 F+1년 착수하는 패키지시설 설계기본요구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가 식별한 요소를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이 요구한 전력화지원요소(안)에 대해 검토 후 소요군과 협의하여 예산편성 시 반영한다.
- ③ 사업별 예산내역은 국내조달과 국외조달로 구분하고, 다년차 반복사업들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동종물량에 대한 일괄계약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한다. 이 경우 소요군·국과연·기품원·신속원 등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요예산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 ④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선행연구·분석평가·운용요구서 작성·수시 시험평가·성능개량·연구개발관리·원가관리·계약 또는 협약관리·규격관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관련부서에서 해당사업의 예산 또는 별도의 사업예산으로 추가 편성할 수 있다.
- ⑤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가능한 한 해당 무기체계 예산과 통합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⑥ 기획조정관, 방위사업정책국, 사업본부 등 관련부서는 선행연구, 비용분석결과, 계약 또는 협약 실적, 수정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 착·중도금 또는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 및 결산자료 등의 예산관련 자료를 실시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의 예산관련 자료를 최신화하여 관리하며, 예산편성 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 ⑦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및 신속원의 업무성과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출연금에 연구활동진흥비(연구개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인력의 성과급)와 연구지원촉진비(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를 편성할 수 있다.
- 제22조(총사업비 관리 및 작성) ① 사업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부장은 총사업비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 ② 사업기간이 2년 미만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대장은 해당 사업부장이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 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대장은 해당과제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 작성·관리한다..
 - ③ 사업본부는 총사업비관리대장의 단계별 사업비 변동사항(낙찰차액 등을 말한다)을 기획조정관 등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후 입찰공고, 사업공고 또는 조달요구를 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총사업비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은 기획재정부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따르고, 기획조정 관은 청 자체 총사업비관리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22조의2(양산 총사업비 심층검토)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 타당성조사를 통해 추정한 양산 총사업비의 변동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정전투용적합 또는 개발 시험평가 결과 기준총족 판정을 받은 이후에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양산 총사업비 심층검토 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1항에 따라 양산 총사업비 심층검토 요청을 의뢰받은 경우 한국국방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에 따른 양산 총사업비 심층검토 결과를 근거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양산 예산 및 총사업비 협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3조(예산편성 대상사업 및 절차)** ①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 대상사업, 편성절차, 편성시기 등은 국방중기 계획과 국방부 예산편성지침 등을 따른다.
 - ② 국과연은 국방중기계획과 국방부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국과연주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과 연구지원분야 등에 대한 예산편성자료를 작성하여 사업본부 및 국방기술보호국에 각각 제출한다.
 - ③ 기품원은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품질보증과 형상관리 기술지원 등에 대한 예산편성자료를 작성하여 사업본부에 제출한다.
 - ④ 사업본부장은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이 제출하는 해당 무기체계의 전력화지원요소 및 시험평가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자료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과연 및 기품원에서 제출한 예산편성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자체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 ⑤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2항에 의하여 국과연에서 제출한 예산편성자료에 따라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 ⑥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각군(해병대 포함)에서 제출한 시범사업 예산편성 자료에 따라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 ⑦ 기획조정관은 자체예산요구서(안) 및 자체분석결과, 사업본부의 자체예산요구서(안)을 포함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 제24조(예산집행 원칙)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은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 예산낭비의 최소화 및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 및 청 훈령「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을 따른다.

제2장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제1절 일반사항

- 제25조(사업추진방법 구분) ① 방위력개선사업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기술협력생산을 포함한다)과 무기체계 구매사업으로 구분하며, 추진절차는 별표 제2호와 같다.
 - ②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외국자본(외국정부 및 외국업체의 자본을 포함한다)의 참여 여부에 따라 국내연구 개발사업과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한다.

- ③ 제2항의 국내연구개발사업은 개발비의 투자주체에 따라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 공동투자연구개발사업 및 업체투자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 연구개발의 추진방법에 따라 연구개발 계약사업과 연구개발 협약사업으로 구분하며, 연구개발의 수행주체에 따라 업체주관(업체단독, 업체-정부출연연구기관, 업체-국과연 등)연구개발사업과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 경제성이 없거나 비닉유지를 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은 하나 이상의 국내·외 연구개발주체가 공동의 연구개발목표를 위하여 개발 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국내·외 연구개발주체가 부담하는 개발비는 등가의 자원으로 대 체할 수 있다.
- ⑤ 무기체계 구매사업은 구매형태에 따라 국내구매사업, 국외구매사업, 임차사업으로 구분한다.
- ⑥ 국방과학기술 진흥과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부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이나 국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부담 및 추진절차·사업관리 등에 관한사항은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에 따르고, 그 밖의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처와 합의한 법령·지침등을 따른다.
- 제25조의2(사업추진 시 국내 우선) ① 기획조정관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안) 작성 시 국외로 지출되는 사업비의 비율이 100분의 20(이하 "국외지출 목표비율"이라 한다)을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 다만, 국외로 지출되는 사업비가 국외지출 목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사업추진방법으로 국내연구개발과 국외구매를 비교할 때에는 국내연구개발을 우선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구매로 추진할 수 있다.
 - 1. 국내연구개발로 획득하는 경우의 수명주기비용이 국외구매 수명주기비용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연 구개발의 총사업비(획득비)가 국외구매 총사업비에 비해 100분의 150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 2. 국내연구개발로는 작전운용성능 및 전력화시기를 충족하기 곤란한 경우
 - 3.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는 경우
 - 4. 기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국내 연구개발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제25조의3 <삭 제 >

- 제26조(사업추진방법별 주요업무 분장 등) 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별, 사업별 각 부서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으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입찰 공고업무 주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평가기준 작성, 사업설명회 주관,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접수, 제안서 평가주관, 계약부서(계약기능을 수행하는 팀·담당관 등을 말한다)와 협의하여 원가부서(원가기능을 수행하는 팀·과 등을 말한다)에 원가산정 또는 가격자료 확보 의뢰, 계약특수조건 추가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 의뢰, 계약이행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관리 및 계약이행완료 최종확인, 사업관련 위원회 상정업무, 기술지원협정(TAA) 관리[체결, 통합사업관리체계 입력, 원본 유지, 유효기간관리 등] (부서별 업무분장은 [별지31]에 따름)

- 나. 계약부서의 업무: 입찰공고검토 및 관리, 입찰등록관리, 사업설명회 지원, 제안서평가 참여, 계약체결, 계약 이행관리
- 다. 원가부서의 업무: 필요 시 통합사업관리팀의 요청에 의한 원가계산업무
- 2. 기술협력생산(면허생산을 포함한다)의 경우
 -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가계약체결(국외조달의 경우에 한한다) 의뢰, 제1호가목의 내용
 - 나. 계약부서의 업무: 예정가격 결정, 가계약 체결, 제1호나목의 내용
 - 다. 원가부서의 업무: 예정가격기초자료 산출
- 3. 기종결정이 필요한 구매사업으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대상장비선정, 가계약체결 의뢰, 제안서평가결과 업체 통보, 기종결정을 위한 위원회 상정, 제1호가목의 내용
 - 나. 계약부서의 업무: 제2호나목의 내용, 목표가격 결정
 - 다. 원가부서의 업무: 목표가격 산정
- 4. 기종결정이 필요없는 구매사업으로서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의 경우
 -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계약특수조건 추가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 의뢰, 사업설명회 지원, 적격심사 기술적 사항 지원, 절충교역 협상지원, 계약이행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관리, 계약이행완료 최종확인
 - 나. 계약부서의 업무: 입찰공고, 사업설명회 주관, 예정가격 결정, 목표가격 결정, 입찰등록업무, 적격심사 주관, 계약체결, 계약이행관리, 선지급금 및 대가지급
 - 다. 원가부서의 업무: 원가계산및 예정가격 기초자료 산정, 목표가격 산정
- 5. FMS에 의한 구매사업으로서 대정부계약의 경우
 -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가격 및 가용성자료와 오퍼확보 요구, 필요한 경우 기술 및 계약특수조건 협상, 사전 오퍼관련 회의 주관, 가격 · 계약일반조건 및 절충교역 협상지원, 오퍼검토 및 물품도입확인 등
 - 나.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의 업무: 가격 및 가용성 자료 확보, 가격 · 계약일반조건 협상주관, 오퍼확보 및 서명, 자금송금 및 오퍼관리
- 6. 사업구분없이 2단계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
 -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계약특수조건 추가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 의뢰, 사업설명회 주관, 제안서 기술 및 규격입찰 주관, 절충교역 협상지원, 계약이행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관리, 계약이행완료 최종확인
 - 나. 계약부서의 업무: 입찰공고, 사업설명회 지원, 예정가격 또는 목표가 결정, 입찰등록업무, 기술 및 규격평가 자료 접수, 가격입찰실시, 입찰결과 업체통보, 계약체결, 계약이행관리
 - 다. 원가부서의 업무: 원가산정 및 예정가격기초자료 산출
- 7.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서 협약의 경우
 -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사업 공고업무 주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평가기준 작성, 사업설명회 주관, 제안 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접수, 제안서 평가주관,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원가부서에 원가산정 또는 가격자료 확보 의뢰, 표준협약서 추가사항을 포함한 협약 체결 의뢰, 협약 이행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관리 및 협약 이행완료 최종확인, 사업관련 위원회 상정업무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나. 계약부서의 업무: 사업공고 검토 및 관리, 입찰 등록관리, 사업설명회 지원, 제안서평가 참여, 협약 체결, 협약 이행관리,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업무 주관, 성실수행평가 의뢰
- 다. 원가부서의 업무: 필요 시 통합사업관리팀의 요청에 의한 원가계산업무
- 8. 기종결정이 필요한 구매사업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가계약체결 의뢰, 제안서평가결과 업체 통보, 제1호가목 중 입찰공고업무 주관을 제외한 내용
 - 나. 계약부서의 업무: 제2호나목의 내용 중 입찰등록관리를 제외한 내용, 목표가격 결정
 - 다. 원가부서의 업무: 목표가격 산정
- 9. 기종결정이 필요없는 구매사업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계약특수조건 추가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 의뢰, 계약체결 관련 기술적 사항 지원, 절충교역 협상지원, 계약이행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관리, 계약이행완료 최종 확인
 - 나. 계약부서의 업무: 예정가격 결정, 목표가격 결정, 입찰등록업무, 적격심사 주관, 계약체결, 계약이행관리, 선지급금 및 대가지급
 - 다. 원가부서의 업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 산정, 목표가격 산정
- 10. FMS 외 구매사업으로서 대정부계약의 경우
 -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대정부계약을 위한 가격 및 판매국 승인 요청, 필요한 경우 기술 및 특수조건 협상, 계약관련 서류 검토, 물품도입 확인 등
 - 나.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의 업무: 계약체결, 자금송금 및 관리
- ② 협상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직접 또는 협상팀을 구성하여 총괄하되, 기술 및 계약특수조건, 협약조건에 관한 협상은 통합사업관리팀에서 주관하고, 가격·계약일반조건에 관한 협상은 계약부서에서,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 은 방위산업진흥국에서 주관한다.
- ③ 방위력개선사업 중 암호장비가 포함된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방위사업정책국장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암호장비 관련 기술자료 확보 및 지원
- 2. 암호장비 관련 사업추진 사항 종합검토
- 3. 대외협력사항의 종합 및 협력
- 4. 정책적인 사항 수립 및 전파
- 제27조(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사업 공고)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혁신법」제8조에 의한 계약업체 및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나 법 제19조에 의한 무기체계 구매계약 체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및 구매계획서에 따라 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및 구매계획서의 업체 선정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제안요청서(안)(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 및 방위사업감독관의 검토결과를 반영한 후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다만,「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8조의2에 따라 선정된 관심사업의 경우 청장에게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구매의 경우에는 목표가의 사후분석을 위하여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최종 협상가 격을 반영한 가격정보를 요구된 양식에 따라 계약전에 재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의 기타 유의사항에 명시한다.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의 작성을 위하여 합참·각군·국과연·기품원·국기연·신속원 및 외부전문기관등의 지원 및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에 충분한 정보를 기재하고 계약 또는 협약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추상적이거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지양하여야 하며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항목・기준 및 배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배점의 제시범위는 사업본부장이정한다.
- ⑥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국과연이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요 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국과연은 시제업체의 선정기준・방법・계획(안)을 수립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 게 제출한다.
- ⑦ 해당 부서장이 예정가격 또는 목표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입찰 또는 사업 공고 전에 해당 원가부서에 공고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⑧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또는 기본설계기본계획서 등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업체에게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부품의 체계 활용성을 검토하여 등록부품활용계획(등록된 부품의 사용여부, 미사용시 사유 등을 포함한다)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등록된 부품에 대해 업체가 기술자료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⑨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구매의 경우 입찰공고(제안요청) 또는 계약체결 의뢰시 업체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업체로부터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미활용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제1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하여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⑩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이 수락된 경우에도 국외업체에게 사업의 보안성, 공정성,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국외업체와의 회의 등에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참석 제한 및 군수품무역대리업체에 대한 자료배포 금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해당 부서장 및 국과연은 사업추진방법별로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을 공고한다. 이 경우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고 제안요청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1. 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 2.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계약업체의 선정기준
- 3. 구매 무기체계의 성능, 대상장비 선정 및 기종결정의 평가기준 요소
- 4. 제안서 작성기준, 제안요청서 배부시기 및 방법, 사업설명회 실시여부
- 5. 그 밖에 청장이 공정한 업체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해당 부서장 및 국과연은 제안서 평가를 하는 사업의 입찰공고를 제안요청서 배부일로부터 기산하여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까지 4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5항 단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제11항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실시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소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제12항에 따른 입찰공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해당 부서장은 입찰 또는 사업 공고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요청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감독관의 법률적 검토 및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입찰 또는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고 제안서의 접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국과연이 제안요청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국과연이 제안요청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의 제안요청서 내용 변경절차를 준용하되 세부절차는 국과연이 별도 정한 바에 따른다.
-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획재정부의「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입찰 또는 사업 공고를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 ⑩ 그 밖에 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공고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 제28조(제안서 접수 및 평가)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로부터 접수된 제안서를 제안서평가팀에 제출한다. 국외구매의 경우에는 시험평가 및 협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상장비 선정 후 소요군 및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협상이종료되면 회수한다. 제안서의 접수 후 수정 및 보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도록 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팀을 구성하여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업체 선정 기준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및 각종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조달기획과에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제8조제3항에 따른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은 국과연 자체 규정에 따른다.
 - ③ 제안서평가팀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서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업체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④ 그 밖에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기종결정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 제29조(사업검증 의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라 선정된 필수 검증대상 사업에 대하여 같은 규정 [별표 제1호]의 주요 단계별로 방위사업감독관에게 검증을 의뢰하여야 하며,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검증대상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 [별표 제1호]의 검증이 필요한 주요단계 중 동일단계에 한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 ·조정 안건에 대한 선행보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0조(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단계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산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을 국방기술보호국장에 요청하여야 하며,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 1. 보호대상 품목 및 기술의 식별
- 2. 도입된 품목 및 기술의 외국 수출허가 또는 그에 준하는 제한사항
- 3.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의 적용방안
- 4. 기타 기술보호 및 사업추진간 기술자료의 국내 외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제31조(사업 예비설명회)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이후 제안요청서 작성하기 전까지 무기체계의 성능,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업 예비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 예비설명회를 위한 공고 및 실시 시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국내업체, 국외업체 및 비밀취급 미인가자의 신원조사기간 등과 업체의 사업 참여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과 실시시점을 적절히 설정하여야 하며, 이 사업 예비설명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회와 별도의 절차이며, 제안요청서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 예비설명회 후 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할 수 있으며, 필요 시「군사기밀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합동무기체계기획서와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항목을 열람시킬 수 있다.

제2절 통합사업관리팀의 구성 및 운영

- 제32조(통합사업관리팀 구성 및 해체) ① 사업본부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본부·사업본부·국과연·기품원·국기연·신속원 또는 소요군(운용·정비·관리요원 포함) 등의 관련인력으로 통합사업관리팀을 구성하되, 사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사업본부장은 통합사업관리팀에 국과연·기품원·국기연·신속원 또는 소요군의 인력을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제공한다.
 - ③ 사업본부장이 제2조제5항에 따라 정부의 타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사업 또는 구매사업 등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을 새로 구성하거나 기 구성된 관련 통합사업관리팀에 그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사업본부장은 제55조에 의하여 해당 사업이 종결된 때에 통합사업관리팀을 해체한다.

제33조(통합사업관리팀 임무) 통합사업관리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작성 및 위원회 상정
- 2. 합참의 전력소요서 검토
- 3. 연구개발 및 구매 사업의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 해당 방위력개선사업 중기계획요구서 및 예산편성 요구(안) 작성
- 5. 연구개발 및 구매 사업을 위한 입찰 또는 사업 공고 주관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 6.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주관
- 7. 기술 및 계약특수조건 협상 수행, 가격 및 계약일반조건 협상 지원
- 8. 협상 총괄·조정 및 계약·협약 체결 관련 업무지원
- 9. 절충교역 추진여부 및 방향 검토, 협상방안 수립 및 협상 지원
- 10. 연구개발사업 및 구매사업의 관리
- 11. 개발시험평가 관리 및 운용시험평가 협조
- 12. 구매시험평가 협조
- 13. 표준화 및 품질관리
- 14. 상호운용성 보장 및 전력화 지원
- 15. 암호장비 연동・체계통합・업체 관급제공・전문관리인력 운영 등에 관한 검토
- 16. 사업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업무 지원
- 17. 해당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와 청본부 총사업비 관리 업무지원
- 18. 사업추진 관련 주요 의사결정문서의 유지・관리
- 제34조(통합사업관리팀 운영 등) ① 사업본부장은 통합사업관리팀을 운영하기 위해 메트릭스 조직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기능별 협력체계 및 연계성 강화 방안과 사업별·기간별 인력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인력 풀 관리가 융통성있게 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사업본부장은 매년 통합사업관리팀 인력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 시 수시로 통합사업관리팀간의 인력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사업부내에서 인력조정을 하고, 그 다음으로 사업본부와 청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인력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본부장이 정한다.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수행간 식별된 문제점이나 주요현안에 대하여 사업본부장이 주관하는 주요사업 현 안관리 협의회 또는 사업부장이 주관하는 주요사업 현안관리 실무협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할 수 있다.
 - ⑤ 사업부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본부 간 사업조정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방위사업 정책국장에게 사업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안정적인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급품 제공, 군수품 대여 등이 필요한 경우 각 군,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구매계약 체결업체와 관급지원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3절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기본전략

제35조(사전개념연구 수행)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합참과 협의하여 법 제15조의3에 따른 사전개념연구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 예산을 반영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사전개념연구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따른다.
- 제36조(선행연구 수행)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선행연구를 수행한다.
 - ② 선행연구 수행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행연구 수행지침」을 따른다.
- 제37조(운용요구서 작성)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운용요구서(안)(별지 제4호서식)을 소요군으로부터 제출받아 선행연구 수행 시 이를 검토하며, 세부사항은 「선행연구 수행지침」제12조를 따른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운용요구서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합참·소요군 등 관련 기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제38조 <삭 제>

- 제39조(사업추진기본전략 (안) 수립)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 및 관련부서 · 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추진기본전략(안)(별지 제5호서식)을 수립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심의 · 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 · 합참 · 소요군 · 국과연 · 기품원 · 국기연 · 신속원 · 한국국방연구원 · 업체 및 전문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1. 사업개요
 - 가. 개요
 - 나. 추진경과
 - 2. 소요결정 사항
 - 가. 소요결정 근거
 - 나. 형상 및 주요 요구성능
 - 다. 필요성 및 운영개념
 - 라.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 마. 작전운용성능
 - 바. 전력화지원요소
 - 3. 선행조치 결과
 - 가. 선행연구 및 후속조치 결과
 - 나. 소요검증 및 후속조치 결과
 - 4. 분과위(실무위) 심의결과
 - 5. 획득방안
 - 가. 연구개발가능성, 방위산업육성효과, 비용, 기술성숙도에 따른 진화적 개발전략적용 여부, 산업·경제적 파급효과(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 사업 필수)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방법의 결정 (연구개발 또는 구매)
 - 나. 연구개발시 제59조에 따른 투자비회수 용이성, 국내기술수준, 사업의 기술적 난이도 등을 고려한 투자형태의 결정 및 투자형태에 따른 사업추진 방법의 결정(계약 또는 협약)
 - 다. 제25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주관기관

- 라. 제61조에 따른 복수 연구개발 사업 추진 여부
- 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국가정책사업 지정여부
- 바. 기타 획득방안에 관한 사항
- 사. 연구개발 추진시 국산화개발이 필요한 부품에 대한 국산화 추진방안(체계개발과 병행하여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의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부품 국산화에 대한 경우 포함(이하 "병행부품 국산화 개발"이라 한다))
- 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일정

6. 중점관리사항

- 가. [필수]시험평가 등 추진방안(시험평가 방법(적정 시제수량, 유도무기의 경우 시험평가 수량 등 확보계획 포함), 시험평가 수행기관, 국내 시험시설, 장비, 능력 확보 등 시험평가 전략에 관한 사항)
- 나. [필수]무기체계 필수기능 5요소 적용방안
- 다. [필수]품질관리 방안
- 라. [필수]수명주기 관리방안
- 마. [필수]위험관리방안
- 바. [필수, 해당사업]패키지시설사업 개략계획
- 사. [해당사업]감항인증 방안
- 아. [해당사업]신기술 적용 및 체계발전 방안
- 자. [해당사업]부족기술 확보 계획
- 차. [해당사업]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 카. [해당사업]절충교역 추진방안
- 타. [해당사업]관급품목 조달계획
- 파. [해당사업]전력소요서에 따라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무기체계의 경우, 데이터 확보 및 관리 계획
- 하. [해당사업]기타 중점관리사항
- 7. 「혁신법 시행령」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 단계를 통합하거나 일부를 생략하여 수행하는 사항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중기전력 신규사업 등 필요한 경우에는 탐색개발기본계획, 탐색개발을 생략한 사업의 체계개발기본계획 또는 구매계획을 사업추진기본전략과 동시에 수립할 수 있다. 함정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설계기본계획 또는 후속함 건조계획(기본설계와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생략하는 경우)을 사업추진기본전략과 동시에 수립할 수 있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기획조정관, 방위사업정책국, 국방기술보호국, 방위산업진흥국, 국제협력관, 사업본부 등(이하 "관련부서"라 한다) 에 검토의뢰하고, 관련부서 및 기관은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토의견을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 1. 획득정책과의 부합 여부
- 2. 재원 확보방안
- 3. M&S 활용에 관한 개략적인 계획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 4. 상호운용성 요구수준 및 암호장비검토의 적절성
- 5. 법률적 문제
- 6. 획득방안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의 타당성 및 시험평가전략의 적절성
- 7. 국방기술기획서상 기확보기술내역, 기술확보계획 및 유사개발계획과 중복여부 등
- 8. 분석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 9. 부품국산화 전략 및 목표(구매사업 추진 시 생략 가능)
- 10. 기 개발된 기동플랫폼 활용 등에 대한 사업적 기술적 검토(기 개발 사업부서)
- 11. 전력소요서에 따라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무기체계의 경우, 데이터 요구사항, 필요 데이터 식별, 확보 및 관리계획
- 12. 기타 필요한 사항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수립 단계에서의 초기 정보교환을 위하여 세미나, 관련업체 및 기관과의 회의, 정보요구서 발송, 설명회, 업체 방문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국가정책사업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항공기 무기체계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감항인증 방안을 수립하고,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라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 진입 판단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활용한다.
- 1.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해 탐색개발 단계로 진입 가능
 - 가. 기술성숙도(TRL) 4 이상인 경우
 - 나. 기술성숙도(TRL) 4 미만이나 기술협력 등 미성숙기술에 대한 대체방안이 마련된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해 기술성숙도(TRL) 6 이상인 경우 체계개발 단계로 진입 가능
 - 가. 기 전력화된 무기체계를 성능개량하는 경우
 - 나. 개발실패 위험성 감소를 위해 복수연구개발로 추진하는 경우
- 3. 핵심기술요소(CTE)가 없는 경우 체계개발단계로 진입 가능
- 4. 그 밖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기술성숙계획, 사업일정 등을 검토하여 체계개발단계로 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체계개발단계로 진입 가능(사업추진기본전략에 체계개발 단계 진입 타당성 검토내용 포함)
- ®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행연구를 실시하지 않은 긴급소요의 경우에는 국·내외 구매를 우선 검토한다
- ⑨ 제117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되어 구매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팀 장은 시범사업에서 수행한 성능입증시험으로 구매시험평가를 대체할지 여부는 국방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 업추진기본전략을 작성한다.
- ⑩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9항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치면 사업추진방법 결정결과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기획조정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40조(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방법 등의 변경이 불가 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소요군 등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기본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 1.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사항
 - 2. 법 제16조에 따른 소요 수정사항
 - 2의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의사 결정한 사항.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업추진기본전략의 수정은 위원회에서 의사 결정하였을 경우로 한함
 - 3. 관련법령 또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변경사항
 - 4. 국방중기계획 또는 예산의 변경사항
 - 4의2.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없어서 연구개발 추진형태를 복수연구개발에서 단수연구개발로 수정하는 사항
 - 5. 기타 무기체계 성능, 사업비용,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선행연구, 분석평가 등 선행조치 재실시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절 상호운용성

- 제41조(상호운용성 보장)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합참, 각군 등 사업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무기체계 획득 전(全) 단계에 걸쳐 합동 및 연합 상호운용성 보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때 일관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을 따른다.
- **제42조(상호운용성 평가 및 수준측정)** ① 상호운용성 평가는 요구사항 평가와 요구사항의 구현을 검증하는 시험평 가로 구분하며 획득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연간 측정계획에 따라 수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상호운용성 평가 및 수준측정을 위한 항목 및 세부절차는 「상호운용성 관리지침」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 제43조(상호운용성 관리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결정문서의 연동합의문서를 근거로 연동대상체계 운용 및 개발기관과 협의하여 연동통제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세설계 완료 전까지 확정한다.
 - 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체계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하여 데이터 및 관련기술의 표준화를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에 따라 데이터 및 관련기술의 표준의 신규 제정, 개정, 폐지 등 표준화 전반에 대한 소요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수시로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방위사업정책국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 국기연 및 신속원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 전 단계에 걸쳐 무기체계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암호장비 획득계획을 수립하고, 전력화 일정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국산 및 외국산(연합) 암호장비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44조(디지털지형정보 상호운용성 보장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책임자는 디지털지형 정보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중복개발 방지, 유지보수를 위하여 국방지 형정보단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지형정보를 활용하되, 국방지형정보단에서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방지형정 보단의 지원 하에 개발 또는 획득하여 활용한다. 이 경우 관련 기관의 기술지원을 요청하고 디지털지형정보 개발 및 활용 계획을 작성하여 무기체계 획득계획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책임자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에 활용한 디지털지형정보의 변경관리, 품질관리, 정확도 검증 및 디지털지형정보 평가에 국방지형정보단을 참여시킬 수 있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책임자는 무기체계 획득사업 수행 간 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간 생산된 모든 디지털지형정보에 관한 기술문서, 관련 소프트웨어, 지형정보 데이터 등 일체의 자료를 재사용 및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국기연과 국방지형정보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은 이를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5조(국방M&S 상호운용성 보장) ① 국제표준연동체계를 사용하여 타 체계와 연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연 동체계에 대한 표준적합성 시험을 받아야 한다.
 - ② 국제표준연동체계를 사용하는 M&S체계의 경우 국기연으로부터 국제표준연동체계 적합성 인증을 받아 국제 표준연동체계 관련 표준적합성을 대체할 수 있다.
 - ③ 국제표준연동체계 적합성 인증시험에 대한 방식, 시기, 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을 따른다.
- 제46조(주파수 획득 관리)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 전 단계에 걸쳐 해당 무기체계 운용에 요구되는 주파수의 가용 여부(기존 주파수의 활용 및 신규 주파수의 확보 가능성)를 방위사업정책국, 합참, 소요군 등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주파수 소요를 소요군 및 합참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주파수 획득 가능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이 때 주장비 이외에 타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주파수도 포함한다.
 - 1. 연구개발사업: 탐색개발 종료 시
 - 2. 구매사업: 기종결정 시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획득방안에 대한 세부검토가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때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에 대한 기술검토 사항을 관련기관(국과연, 국기연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은 기술검토 결과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절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관리

제47조(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획득 및 관리 원칙) ①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할 때 해당 무기체계의 수명주기 동안 효율적인 운영유지 및 성능개량 활동이 보장되도록 소프트웨어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이를 국방규격에 포함해야 한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소프트웨어는 국내개발 및 국산 소프트웨어 적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체계개발 시경제성,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산과 외산 소프트웨어를 동시 적용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시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양산 시 재활용할 수 있다.
- ③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획득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 검토 및 심의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은 통합사업관리팀장, 소요군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협의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범위 및 세부내용을 결정하여「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라수행하며,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은 국과연이,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은 신속원이 기술지원을 한다.
- **제48조(국산소프트웨어 적용 현황 확인)** ① 기품원장은「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매년 소프트웨어 적용 현황을 종합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한다.
 - 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소프트웨어 국산화 이행실태 현황확인 결과를 반영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49조(연구개발의 수행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국과연 및 업체 등(이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에서 작성한 소프트웨어개발계획서를 검토 및 승인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연구개발 단계별로 작성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기관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무기체계 획득 시 내장형 소프트웨어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무기체계 소프트웨어가 정확하고 일관성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소스코드 내의 잠재적 결함을 최소화시키는 신뢰성 확보 활동 및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보안성 확보 활동을 연구개발 단계별로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연구개발 단계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데이터를 차질없이 확보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50조(기술자료 작성 및 관리) ① 규격화 대상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는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지침」에서 정의하는 형상통제 대상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와 소프트웨어 산출물명세서에 포함된 유지보수 및 재사용을 위한 각종 컴퓨터화일(소스코드, 각종 라이브러리 및 오브젝트코드, 실행파일 등을 말한다)을 포함하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방규격의 제정은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다.
 - ② 사업추진 단계별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에 따르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성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절 분석평가

- 제51조(분석평가 구분 등) ① 분석평가는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사업분석과 비용분석으로, 수행방법에 따라 자체분석과 용역분석으로, 사업단계에 따라 계획단계분석·예산단계분석·집행 중 분석·집행성과분석으로 구분한다.
 - ② 분석평가 대상사업, 수행절차, 내용, 양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서」에 따른다. 단, 사업 타당성조사와 중복되는 내용의 경우 분석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2조(분석평가결과 활용)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분석평가 결과를 통보하여 관련 부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사업본부장은 방위사업정책국장이 통보한 분석평가결과를 사업에 활용하여야 하고, 사업성과관리체계를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추정된 목표비용 및 사업성과관리 기준선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방위사업정책국장으로부터 분석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영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그사유를 첨부한다.
 - ④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분석평가결과 중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연구개발의 경우 5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와 관련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정책반영 결과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⑤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안건 상정 시 분석평가결과 활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⑥ 사업본부장 및 국과연소장은 자체분석 및 용역분석 결과자료를 보존하고 전체 분석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절 전력화 조치 및 사업종결

- 제53조(야전운용시험·전력화평가 지원 및 후속조치)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소요군이 통보한 야전운용시험·전력화평가계획서를 검토하고, 사업본부장과 협조하여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및 시설, 기술 등 지원사항을 식별하여 지원한다.
 - ② 제1항의 전력화평가계획서에 따라 분석평가 자료는 방위사업정책국장이 지원하고, 기술 및 인력 등은 사업본 부장이 지원한다.
 - ③ 사업본부장은 소요군이 야전운용시험·전력화평가 수행을 위하여 청 소속직원과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신속원, 업체 등의 요원이 포함된 시험·평가지원팀의 구성·운영을 요청할 경우 지원한다.
 - ④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요군이 전력화평가 후 1개월 이내에 통보한 평가결과(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사업본부장에게 재통보하며 사업본부장은 2개월 이내에 후속조치계획을 수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립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후속조치한 결과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도 함께 제출한다.

- 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4항의 후속조치 계획과 결과를 국방부 및 소요군에 통보하고, 후속조치 진행사항을 확인 및 조정한다.
- ⑥ 사업본부장은 야전운용시험 후속조치단계의 우선조치사항을 소요군과 협의하여 사업기간 내 보완하여야 한다. 성능개량사항은 청 또는 소요군이 차기계획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전력화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교훈을 차기후속사업 및 유사사업 추진에 반영하며, 소요군과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국방부의 야전운용시험·전력화평가 조정결과에 따라 추진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업별 전력화평가 외에 소요군이 차기년도의 연간 전력화평가계획서를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면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제54조(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후 조치사항)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사업 종결 전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 및 핵심기술 품목과 수명주기가 짧은 통신전자 부품 등 단종이 예상되는 부품 등을 선정하여 별도로 개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이 실시하는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결과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정 연구인력과 관련예산의 확보계획을 체계개발계획서 및 양산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연구개발사업 종결 후 소요군은 무기체계 운영유지단계에서 발생한 결함사항 및 운영개선사항들을 사업본부 및 기품원, 국기연에 통보하고, 사업본부장은 개선여부와 수행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한다. 이 경우에 형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업지원부(기반전력사업지원부 및 미래전력사업지원부를 말한다)장이 수행하며, 사업본부장은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및 신속원으로 하여금 기술지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5조(사업종결)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별로 모든 차수의 사업이 완료되고 최종 대금지급 및 전력화가 완료되어 사업과 관련하여 더 이상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집행종결보고서(별지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사업을 종결한 후 방위사업정책국, 사업지원부. 국방부, 합참및 소요군(운영부대 포함) 등 관련부서에 이를 통보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집행종결보고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모든 관계서류와 자료를 해당 사업부장이 지정한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별도의 문서이관 절차에 따라 인수인계를 실시한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FMS구매사업에 대하여 오퍼정산이 완료되었다는 국제협력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대금지급내역과 정산(세입)현황을 파악한 후 제1항에 의한 집행종결보고서 및 FMS구매 정산 내역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조정관 및 국제협력관에게 사업종결을 통보한다.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영유지단계 형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종료 1개월전까지 사업지원부와 기품원 및 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의 집행종결보고서 작성 시 제2호 사항의 제출여부를 포함하여야한다.
 - 1. 사업개요, 추진경과 및 작전운용성능 등 사업관련 내용
 - 2. 국방규격 제정현황 및 목록(국방규격서, 도면, 부품목록/자재명세서, 품질보증요구서, 포장제원표 등을 말한다)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수명주기관리계획서(부품단종관리 계획서 포함) 및 기술교범
- 4. 적용 기술의 지식재산권 현황 및 목록, TAA 현황
- 5. 기타 형상관리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3장 연구개발사업

제1절 일반사항

- 제56조(무기체계 연구개발 기본절차) ①「혁신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탐색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양산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따라 탐색개발을 생략하거나, 체계개발단계 종료 전에 양산업체를 선정하고 양산을 먼저 착수할 수 있으며, 체계개발과 양산을 통합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 ② 무기체계 및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개발환경을 고려하여 사업관리 기본절차를 변경적용하거나 주요의사결 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반영하여 적용한다.
 - ③ 탐색개발단계의 주요 수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개발 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핵심기술 획득계획에 따라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시뮬레이션 또는 모형 제작·시험 등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입증하거나 시제품의 제작·시험 등을 통해 기술을 입증한다.
 - 2. 체계개발의 적기 수행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장기발주 품목 또는 부체계 핵심기술 개발품목에 대하여 발주 또는 개발을 착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탐색개발 업무범위 및 필수사항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가능한 소요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 3. 체계요구조건검토, 기술성숙도평가, 운용성확인, 작전운용성능결정, 진화적 연구개발전략 수립, 체계개발 일정과 소요비용 산출,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 등을 수행한다. 이 경우 소요군(운용, 정비, 관리요원 포함),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및 민간 연구소 등의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품원은 RAM 자료 분석결과 및 품질자료를 수집하고, 양산관점의 품질보증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4. 기술성숙도평가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체계개발단계로의 진입여부 결정 시 반영한다.(기술성숙도 6 이상인 경우는 체계개발단계로 진입 가능)
 - ④ 체계개발단계의 주요 수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 1. 소요결정 절차에 의하여 중기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을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설계·시제품제작·시험평가를 통해 양산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단계로서 설계를 통해 체계의 통합성을 확인하고 부분품에서 체계에 이르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험평가를 통해 검증하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제78조를 따른다.
 - 2. 체계개발단계 종료 시점은 국방규격화 완료 시점을 원칙으로 한다.
 - 3. 제조성숙도평가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양산단계로의 진입 여부 결정시 반영한다.
 - 4. 체계요구조건검토, 체계기능검토, 기본설계검토, 상세설계검토, 시험준비상태검토,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 평가 수행과 결과판정 및 체계기능형상확인, 양산기준설정 등을 위한 물리적 형상확인 등을 수행한다. 이 경우 체계요구조건검토는 탐색개발을 생략하는 경우에만 수행하며, 세부적 사업관리절차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정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5. 기본설계검토, 상세설계검토회의 등 수행 시 소요군(운용·정비·관리요원 포함),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및 민간연구소 등의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품원은 RAM 자료 분석결과 및 품질자료를 수집하고 양산관점의 품질보증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⑤ 양산단계의 주요 수행내역은 체계개발 완료된 무기체계를 양산하는 것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초양산과 후속양산으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혁신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정된 방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탐색개발실행계획 또는 체계개발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연구개발 중에 선정・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다음 단계로의 사업추진여부 심의 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정책적ㆍ경제적 고려사항, 해당단계의 기술성숙도 및 제조성숙도 평가결과 등을 심의안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성숙도평가는 「기술성숙도평가(TRA)업무지침」, 제조성숙도평가는 「제조성숙도평가(MRA)업무지침」을 따른다.
- ⑧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에서 양산단계 진입 시 제조성숙도 목표수준을 3회 이상 미충족한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 ⑨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탐색개발 및 체계개발)의 사업기간 중에 개발업체에 대해 사업수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평가 결과를 연구개발업체 선정 시 평가자료 및 협약의 중간점검자료로 활용할수 있다. 이 경우 사업수행평가에 관한 세부절차는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른다.
- ⑩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추진 간 소프트웨어 개발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과정에서 기술인력, 장비 및 설비 등이 필요한 경우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등 국·내외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시험평가 또는 시운전 중 안전사고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반조치에는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대비한 보증조치(보험가입)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보증조치(보험가입) 시에는 사업의 위험, 시험평가 환경 및 예상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보험가입 시「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7항에 따라 기술성숙도평가결과보고서에 포함된 기술성숙도평가결과 일부 기술성숙도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미성숙기술에 대해 평가팀 권고사항 및 개발기관이 제시한 기술성숙계획(개발계획,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일정 변경, 사업 추진 여부 결정 등 다음단계로의 진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④ 전력화되어 운용유지단계에 있는 함정, 항공기 등 플랫폼에 탑재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통합사업 관리팀장은 해당 플랫폼과의 원활한 체계통합을 위해, 해당 플랫폼을 운용 중인 소요군, 개발기관(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관리기관)과 탑재장비사업팀, 기품원 장비업체 등이 참여하는 체계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추진 간 원활한 체계통합을 위해 탑재시기 및 방법, 연동비용, 체계연동합의서(ICD) 등을 협의・조정하여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 야 한다.
- ⑤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경우, 이에 필요한 데이터의 확보 및 관리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각군의 재활용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연구개발 단계별 시험평가 및 수락시험(함정사업의 경우에는 시운전) 등 수행 시 각군으로부터 재활용장비에 대한 기술지원계획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57조 <삭 제>

- 제58조(연구개발 기본절차 통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혁신법 시행령」제3조제1항단서에 따라 기술의 진부화 방지, 효율적인 연구개발 및 전력화 시기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탐색개발단계와 체계개발단계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진한다.
 - 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단계의 주요 수행내역(무기체계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개발,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 가능성, 체계요구조건검토, 기술성숙도평가, 작전운용성능, 진화적 연구개발전략 수립 등)을 포함한 체계개발기본계획서를 작성한다.
 - 2.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요소들의 성숙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성숙도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운용성확인을 할 수 있다.
 - 3.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성숙도평가 또는 운용성확인 이후 합참에서 중기전력소요 전환 시 작전운용성능의 결정 요구와 기술적·부수적 성능안을 결정한다.
 - 4. 기타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체계개발단계 연구개발절차에 따른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혁신법 시행령」제3조제1항단서에 따라 기술의 진부화 방지, 효율적인 연구개발 및 전력화 시기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계개발단계와 양산단계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체계개발기본계획에 시험평가결과 "전투용 적합" 또는 "잠정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전투용 부적합 판정시에는 부결 조치) 양산계획(안)을 포함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산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 **제59조(국내연구개발사업 추진)** ①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내연구개발사업은 업체의 투자비 회수 용이성, 국내기술수준, 사업의 기술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형태를 검토하여 추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를 우선 검토한다.
 - 1. 탐색개발단계에서의 연구개발사업
 - 2. 체계개발로 전력화가 완료되는 연구개발사업
 - 3. 기타 사업의 특성, 전력화 시기,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부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② 국내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내 기술수준이 부족하거나, 수출에 따른 구매국 요구 등에 의한 외국과의 기술협력이 필요한 경우 선행연구단계에서 국내 기술수준 분석, 해외 기술보유현황 및 기술협력・확보 방법 등 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에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협력 여부를 결정한다.
 - ③ 국내연구개발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이 전반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업체가 주관하여 체계설계 및 시제품 제작을 수행하며,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 시 주요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수행하기 위하여「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개발현장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과연이 주관하는 국내연구개발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이 사업을 조정·통제하고, 국과연이 개발계획 수립, 규격서 및 기술자료를 작성하며 시험평가·품질보증·종합군수지원 등 기본적인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고, 업체를 활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한다.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혁신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업체투자사업 또는 공동투자사업인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로 사업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협약)조건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규칙 제25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참여자간의 투자분담율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1. 공동투자인 경우 별표 제5호에 따른 투자비 분담율, 연도별 분담금액
- 2. 정부 또는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협약)의 해제 해지 시 업체 연구개발 투자금 처리방안
- 3. 연구개발 시제품 등 활용방안
- 4. 업체투자인 경우 업체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부 소유 또는 실시권 부여
- 5. 그 밖에 사업추진 상 필요사항
- ⑥ 업체투자사업의 경우 단계별 평가 등을 통하여 업체가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협약기간을 연장하여 무기체계의 개발성공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한 무기체계에 대해 규격화 완료 후 개발업체가 군용규격물자임을 표시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요청하면 이를 발급하고 방위산업진흥국, 계약부서, 소요군, 기품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국과연과 기품원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지원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소요되는 기술지원 비용을 미리 연구개발 출연금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59조의2(관・도급심의위원회) ① 사업본부장 소속하에 관급/도급 품목 분류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관・도급 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관·도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무기체계의 최초 관・도급 품목 분류에 관한 사항
- 2. 무기체계의 사업진행 중 관·도급 품목 분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제59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도급 품목 재분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사업본부장이 관・도급심의위원회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관·도급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관·도급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때, 위원의 20% 이상은 제6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 1.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 2.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 3. 방위사업정책국장
- 4. 방위산업진흥국장
- 5. 안건제기부서 부・단장
- 6. 외부위원
- 7.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안건관련 관계기관(국방부, 방사청, 합참, 각군, 국과연, 기품원)의 국장급 공무원, 장성 급 장교 또는 임·직원
- ⑤ 관·도급심의위원회는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⑥ 관·도급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 ⑦ 그 밖에 관·도급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본부장이 정한다.
- 제59조의3(관·도급 품목 분류기준 및 절차)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품목은 관급으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도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않을 수 있다.
 - 1.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
 - 2. 탄약, 암호장비, FMS 및 대정부계약 구매장비, 재활용장비 등 업체 구매가 불가한 품목
 - 3. 정부투자 연구개발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예정인 품목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품목은 관급으로 조달 요청이 가능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장납기 장비 등 사업추진 여건상 관급으로 분류가 필요한 품목
 - 2. 체계통합시 성능발휘에 문제가 없으면서 주장비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품목 및 협력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도급품목은 관리의 범위를 실행계획서 등에 명시하여 관리한다.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가 제2항에 따라 제안서에서 관급으로 조달 요청한 품목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후관·도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상에 의해 확정한다.
 -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진행 중 관·도급 품목 분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체와 협의 후 관·도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 이후 양산계획 수립 전에 수행하는 사업중간점검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도급 품목 검토 후 관·도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분류할 수 있다.
 - 1. 타 사업에 동시구매함으로서 예산절감효과 가능한 품목으로 관급 전환이 필요한 경우
 - 2. 사업진행에 따라 사업관리 위험도가 충분히 낮아진 품목으로 관급전환이 필요한 경우
 - 3. 업체가 전환을 요구한 품목 중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합의된 경우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최초양산과 후속양산으로 구분되는 사업의 경우 후속양산계획 수립 이전, 함정사업의 경우 후속물량 건조 전에 재분류 할 수 있다.
- 제60조(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판단을 위해 비용의절감여부, 획득일정 충족여부, 국내 연구개발 수준, 방산수출 가능성 등을 우선 검토사항으로 하여 선행연구의 조기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 국제공동연구개발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정기 및 수시 국제회의(국제방산군수공동위, 기술협력회의 등을 말한다)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 및 국제협력관에게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의사를 통보하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업체・연구기관으로부터 무기체계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제안받았을 경우에는 기품원, 국과연, 국기연 및 신속원의 지원을 받아 국제공동연구개발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들로 검토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개략적인 비용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검토결과 국제공동연구개 발로 추진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에 반영하여 위원회 심의 후 추진할 수 있다.
 - ③ 해당 사업부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 희망국간 국제공동연구 추진의사 합의 시 국제공동연구개발 착수준비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국제공동연구개발추진위원회를 운용할 수 있다.
 - 1. 국제공동연구개발추진위원회는 청, 기품원, 국기연, 국과연, 신속원, 합참, 소요군 등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주관업체 및 법무담당을 포함할 수 있다.
 - 2. 국제공동연구개발추진위원회는 참여국간 작전운용성능 조정, 사업협정서 작성, 참여국간 임무분담 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 시 합참에 작전운용성능 변경을 요청한다.
 - ④ 국제공동연구 참여 희망국 간에는 양국 국내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사업추진방법, 사업관리 등을 규정한 기관간 약정(양해각서 또는 사업협정서를 말한다)을 별도로 체결하여 추진하며,「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체적인 사업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간에 체결한 약정의 위임을 받아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을 해당 사업부장의 결재를 받아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있다.
 -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방향과 연구개발 자원분담 등의 주요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업추진 간 발생한 주요한 문제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규격문서를 작성하여 참여국가별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범위는 양국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⑦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연구개발 종료시점은 연구개발 후속조치에 대한 최종협의, 연구개발 종결보고서 작성 및 양산계획 수립까지로 한다. 사업종결 이후 분쟁 예방을 위해 연구결과물의 후속조치를 적절하게 협의하여야 한 다.
- 제61조(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 ① 복수 연구개발사업은「혁신법 시행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무기체계, 구성장비 또는 구성품을 연구개발로 획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2개의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시제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1. 정부투자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개발비 및 양산비의 합을 말한다)가 1,000억원 이상이고 개발비가 총사업비의 10% 이내인 사업 중 경쟁을 통해 양산단가 절감목표율 이상 비용절감이 가능하여 총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는 경우. 다만, 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000억원 이하도 가능하며, 절감목표율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양산단가 절감목표율(%) ≥ [1-{(계획양산단가-(단수업체개발비÷양산수량))÷계획양산단가}}•100

- 2. 사업의 기술적 난이도가 높거나 복잡성이 심하여, 개발 실패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 3. 국내 방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우
- 4. 그 밖에 국방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선행연구를 거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 가능여부를 검토·반영할 수 있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 및 협상을 통해 2개의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업체를 선정한다.
- ④ 복수 연구개발사업은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탐색개발은 생략가능하다.
- ⑤ 복수 연구개발사업의 체계개발실행계획서는 연구개발주관기관별로 작성한다.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시 시제개발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국과연이 계약한 시제업체로부터 시제생산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복수연구개발 업체에서 제시한 양산단가 목표 관리계획, 최대 양산단가 등을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등에 포함하여 양산업체 선정시까지 관리한다.
- ⑦ 복수 연구개발사업의 최종 양산 대상 무기체계, 구성장비 또는 구성품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요구조건충족 시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최종 양산대상 무기체계, 구성장비 또는 구성품의 결정과 제84조에 의한 양산계획에 대한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 ⑧ 복수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체계개발의 경우 양산 대상 무기체계가 결정되고, 결정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규격화가 완료되었을 때를 연구개발 종료시점으로 본다. 다만, 양산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무기체계를 개발한 연구개발은 양산 대상 무기체계 선정에서 탈락되었을 때를 연구개발 종료 시점으로 한다.
- ⑨ 통합사업관리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 후 운용시험평가 결과판정 이후 판정결과와 관계없이 제81조에 따라 체계개발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2조(경미한 성능개량)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소요제기기관에서 경미한 성능개량에 대한 소요를 제기한 경우무기체계 특성 및 유사사업 수행사례 등을 고려하여 소관 사업본부를 지정한 후 통보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요제기서에 대하여 성능개량 필요성, 중·장기 소요와의 관계, 성능개량 요구사항, 소요량 및 전력화시기, 기존체계 영향성, 획득방안, 비용 및 기타 제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합참,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신속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인력으로 소요검토팀을 구성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 운영할 수 있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소요제기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요제기기관에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각 운영규정 심의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친 성능개량추진계획에 따라 성능개량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행중인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성능개량추진계획은 제39조를 준용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체계개발기본계획 또는 구매계획을 성능개량추진계획과 동시에 수립할 수 있다. 필요 시 선행연구에 준하는 분석평가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요청할수 있다.
- 1. 소요군으로부터 성능개량 요구사항이 제기된 경우
- 2.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을 수행하면서 기능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 3. 신기술 또는 상용기술(상용제품에 사용된 기술)의 적용으로 성능 및 기능향상이 가능한 경우
- 4. 무기체계의 수명연장을 위해 구성장비 교체가 필요한 경우
- 5. 그 밖에 형상관리의 일환으로 성능 및 기능향상이 제기된 경우
- ⑤ 경미한 성능개량 분야의 시험평가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
-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기적으로 군에서 또는 외주로 창정비(정비개념 중 완전복구와 재생정비가 목표인 최상 위 정비단계)를 수행하는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은 창정비와 통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부대 현장에서 성능개량 요소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거나, 적시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성능개량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예외로 한다.
-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성능개량 시 수입품(구성품, 부품)과 국산화 개발품에 대한 비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다.
- 제62조의2(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제62조제1항에 따른 합참의 경미한 성능개량 분류를 받지 않고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운용 중이거나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로 운용환경의 현저한 변경이 없고 중대한 운용성능의 변경이 없이 일부 단순한 성능개량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만,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차수의 양산사업은 제외한다.)
 - 2. 총사업비가 200억원 미만인 경우
 - 3. 계약시작부터 계약종료까지 24개월 이내인 경우
 - ③ 그 밖에 세부 절차 및 내용은「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다.
- 제63조(사업성과관리체계 및 체계공학 절차 적용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비용 및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기간 3년 이상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과관리기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경우 해당사항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명시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등 관련지침에 따른다.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양산 목표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기간이 3년(36개월) 이상 또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비용관리기법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사항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명시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과학적사업관리수행지침」등 관련지침에 따른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총수명주기를 고려하여 체계공학에 관한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 제64조(M&S 기반 연구개발 확대) ①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일정, 비용, 성능의 과학적 검증・예측을 통한 합리적・경제적 연구개발 관리를 위하여 무기체계의 수명주기 각 단계별 M&S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그 결과를 연구개발결과보고서 제출 전에 시뮬레이션 기반획득(이하 "SBA"라 한다)통합정보체계에 등록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M&S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검증, 확인 및 인정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M&S 기반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은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등에 따른다.
- 제65조(사업중간점검)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소요, 사업비용, 일정 등에 대한 사업관리 위험요소를 점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외의 경우라도 사업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중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신속원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1. 상세설계검토 종료 후 2개월 이내
 - 2. 시험평가 이후 양산계획 수립 이전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작전운용성능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 수정 필요성
 - 2. 목표양산단가 및 소요량 증감 등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필요성
 - 3. 사업기간 및 전력화시기 조정 필요성
 - 4. 기타 개발추진 간 위험요소에 대한 영향성 및 부품단종, 부품국산화, 관도급 분류 적정성 등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비용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탐색개발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에는 탐색개발 단계에서도 사업의 중요도, 기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중간점검(운용성 확인 이전)을 할 수 있다. 함정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설계검토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중간점검을 하여야 한다.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소요수정 요구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별 이견으로 국방부 차원의 조정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방위사업협의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기획조정관, 사업본부,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방위사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방위사업협의회에서 토의된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회의 안건 심의 시 토의결과를 제기하여야 한다.

- 제66조(기타사항)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작성한 위탁연구계획에 따라 위탁연구과제 및 기관을 선정하되, 이를 위하여 제안서평가팀을 별도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위탁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 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연구기관을 선정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아야 한다.
 - ②「혁신법」제8조제8항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 절차는「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시제품 활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 및 국기연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품 국산화 개발사업 체계장착시험에 활용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를 연구개발 시제품 활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 사업기간 및 양산 물량
 - 2. 후속・차기 사업계획
 - 3. 해당 무기체계 국산화율
 - 4. 활용 필요 적정 시제품 수량
 - ④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연구개발 시제품과 정부에서 투자한 개발·시험장비 및 시설은 연구개발 종료 후 청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다만, 그 사업비의 편성예산 성격에 따라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등 출연기관의 출연금으로 편성된 경우는 해당 출연기관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청 자산으로 등록된 연구개발 시제품 및 개발·시험장비(이하 "시제품등"이라 한다)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하려는 자산의 품명, 관리번호, 수량, 대여목적, 대여기간, 대여장소 및 기타 대여조건(유·무상대여, 손·망실 시 변상조건 등) 등이 명시된 시제품 사용계획서를 검토 후 계약부서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 ⑥ 계약부서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제5항에 따른 계약체결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시제품 대부계약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작성하고 사업부장의 승인(서명)을 받아 시제품등의 대여를 수락할 수 있다.
 -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주관 연구개발 시 국내에서 국과연만 보유한 설비사용은 국과연과 협조하여 설비사용계획을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반영한다.
 - ⑧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탐색개발, 체계개발 및 양산 단계의 각종 시험평가에 사용된 장비 및 부품(수리부속)중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품목은 시험평가 완료 시 소요군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계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고, 선별된 품목은 소요군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인계한다. 소요군은 인수 품목에 대하여 각군 재산계정 및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2절 일반 무기체계

제67조(탐색개발기본계획서 작성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보고결과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근거로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전에 탐색개발기본계획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한다.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등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탐색개발기본계획을 보완하고 분과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탐색개발기본계획서는 국과 연에 통보한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탐색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소요군 등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탐색개발기본계획을 수정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 1. 법 제16조에 따른 소요 수정사항
- 2.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사항
- 3.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의사 결정한 사항
- 4. 관련법령 또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변경사항
- 5. 국방중기계획 또는 예산의 변경사항
- 6. 기타 무기체계 성능, 사업비용,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과 다르게 탐색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우선 또는 동시에 수정하여야 한다.
- 제68조(탐색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서를 근거로 연구개발주관업체로 하여금 탐색개발실행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 추진기본전략 및 탐색개발기본계획과 다르게 탐색개발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탐색개발기본계획을 우선 또는 동시에 수정하여야 한다.
 - ②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과연이 시제개발계획을 포함한 제1항의 탐색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9조(탐색개발실행계획서 확정 및 계약)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68조에 따라 작성된 탐색개발실행계획서를 해당 사업부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주요 연구개발사업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소요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계약 또는 협약 체결을 의뢰할 때 항목별 산출내역(비용분석자료 등 활용)이 포함된 탐색개발실행계획서를 계약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장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의 세부산출내역 확인 후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다.
 - ③ 국과연은 확정된 탐색개발실행계획서에 따라 시제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과연이 계약한 시제업체로부터 시제생산계획을 제출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0조(탐색개발 수행)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에 근거하여 탐색개발을 수행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59조제3항에 따라 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업체는 공식기술검토회의 자료를 통합사업관리팀 및 신속원에 회의 개최 2주일 전에 제출하고, 신속원은 관련자료 검토 후 공식기술검토회의 진입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1주일 전에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하며, 통합사업관리팀은 신속원 의견을 참고하여 기술검토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회의를 실시한다. 신속원은 기술검토회의 시 제기된 기술분야 보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검토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한다.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물에 대해 기술성숙도 평가를 관리한다.
- 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요구서를 토대로 예비 체계요구사항명세서를 작성한다.
- 제71조(탐색개발실행계획 수정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탐색개발 실행계획을 수정하거나 탐색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
 - 1. 탐색개발의 예상결과가 일정 및 비용측면에서 계획당시의 목표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2. 전시·사변·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탐색개발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탐색개발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 3.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건의가 있는 경우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탐색개발실행계획을 수정하거나 탐색개발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 군 등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해당 사업부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주요 연구개발사업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한다. 다만,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과연소장의 결재로 수정할 수 있다.
 - 1. 법 제16조에 따른 소요 수정사항
 - 2.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사항
 - 3. 제67조제4항에 따른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수정사항
 - 4.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의사 결정한 사항
 - 5. 관련법령 또는 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변경사항
 - 6. 국방중기계획 또는 예산의 변경사항
 - 7. 기타 무기체계 성능, 사업비용,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탐색개발의 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부서장에게 계약의 변경·해제·해지 또는 협약의 변경·해약 등을 의뢰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장은 세부산출내역서 등의 수정사항 등을 확인 후 계약의 변경·해제·해지 또는 협약의 변경·해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확정된 사업기간 및 예산범위 내에서 국과연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결과를 통보받아야 한다.
 - ④ 계약부서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 변경을 위해 계약 또는 협약 금액 변동여부를 검토해야 할 경우 외부용역기관이나 자문위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탐색개발기본계획과 다르게 탐색개발실행계획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탐색개발기본계획을 우선 또는 동시에 수정하여야 한다.

- **제72조(탐색개발 내용)** ① 선행연구에서 정립된 체계운용개념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주어진 임무를 충족하는 여러 방안들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무기체계에 대한 체계운용개념과 기술수준을 확정한다.
 - ② 체계운용개념 전반은 개략적인 체계구성을 통하여 확인하고, M&S를 이용하여 개념적인 무기체계 구성에서 주 구성 장비의 개략적인 성능과 장비간의 연동 및 무기체계와 관련 있는 타 체계와의 연동을 확인한다.
 - 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술성숙도평가결과 목표 성숙도수준(기술성숙도 수준 6)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성숙도평가는 「기술성숙도평가(TRA) 업무지침」을 따른다.
 -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의 운용개념, 체계구성, 기술성숙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검토결과가 타당할 경우에는 운용성확인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⑤ 주 구성 장비의 주요 성능과 기술성숙도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기술검토 결과가 타당할 경우에 한하여 간이 장비를 사용하여 주 구성 장비와의 연동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제73조(탐색개발 결과보고)**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이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탐색개발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작성하고 통합사업관리팀의 검토를 거쳐 합참에제출한다.
- 제74조(탐색개발결과에 따른 조치)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를 합참 및 소요군으로 통보하여 중기소요 전환 시 작전운용성능의 결정 요구와 기술적・부수적 성능안을 결정하며, 관련 자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중기소요전환 및 작전운용성능이 이미 완료된 경우, 탐색개발결과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작전운용성능이 수정되거나 수정계획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단계로 추진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 체계개발로의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추진기본전략 중에서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혁신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탐색개발 결과 탐색개발의 주관기관 및 시제업체가 계속하여 체계개발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탐색개발참여업체로 하여금 체계개발을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5조(체계개발기본계획서 작성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보고결과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근거로 관련부서와 합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전에 체계개발기본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등 관련기관 및 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체계개발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개발기본계획서는 국과연에 통보한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체계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소요군 등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수정한다.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 1. 법 제16조에 따른 소요 수정사항
- 2.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사항
- 3.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의사 결정한 사항
- 4. 관련법령 또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변경사항
- 5. 국방중기계획 또는 예산의 변경사항
- 6. 기타 무기체계 성능, 사업비용,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과 다르게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우선 또는 동시에 수정하여야 한다.
- 제76조(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추진기본전략, 탐색개발결과 ,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등을 근거로 미래 기술수준 예측과 신규무기체계 장착운영을 위한 진화적 개발전략, 사업의 제약조건(기간ㆍ비용 등을 말한다), 부품의 단종 및 향후 성능개량 계획 등을 고려하여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체계개발기본계획과 다르게 체계개발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우선 또는 동시에 수정하여야 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과연으로 하여금 시제개발계획을 포함한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업체가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되, 필요 시 신속원으로 하여금 업체의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받았을 경우이를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간「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총수명주기체계관리를 위한 최적군수지원 소요 판단자료인 RAM 분석자료(전산파일)를 소요군에 제출하고, 신뢰도성장을 위한 계획과 조치결과를 포함한 RAM 분석결과 보고서를 소요군에 통보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27조제8항에 따라 등록부품활용계획을 제출한 경우 국산화기본 계획을 작성할 때 등록부품활용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등록부품활용계획에 대해 관계기관(방위산업진흥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77조(체계개발실행계획 확정, 수정 및 계약·협약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실행계획을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또는 수정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주요 연구개발사업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또는 수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계약 또는 협약 체결을 의뢰할 때 항목별 세부산출내역 (비용분석자료 등 활용)이 포함된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계약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장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의 세부산출내역 확인 후 계약 또는 협약 체결을 한다.

법제처 37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국과연은 확정된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기본설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시제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단,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과연과 협의결과에 따라 체계개발실행계획 승인 이후 기본설계검토전까지 적절한 시기에 국과연이 시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과연이 계약한 시제업체로부터 시제생산계획을 제출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체계개발실행계획의 수정, 계약 또는 협약 변경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탐색개발실행계획에 관한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사업부장은 사업본부장으로 본다.
- 제78조(체계개발 수행)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체계개발실행계획에 따라 체계개발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59조제3항에 따라 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제79조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핵심부품·구성품과 완성체계 시제품은 검증에 필요한 최소단위 수량으로부터 전술운용편제단위 수량까지 제작할 수 있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결과물에 대해「제조성숙도평가(MRA) 업무지침」에 따라 제조성숙도평가를 관리한다.
 -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요구서를 토대로 체계요구사항명세서를 작성한다.
 -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품질보증업무, 규격화 및 목록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개발 단계부터 사업지원부 및 기품원에 규격화 목록화 활동 및 품질보증활동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원부 및 기품원은 지원하여야 한다.
 -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원가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체계개발시부터 원가 자료 확보업무를 계약부서 및 원가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기품원·신속원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체계개발단계(시험평가 중단, 기준미달 및 전투용 부적합 판정 이후 조치단계 포함)의 각종 기술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며, 국방규격 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체계개발 초기부터 수행한다.
 - ⑧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의 공식기술검토회의는 제70조제3항의 절차를 따른다.
 - ⑨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성과관리체계 적용사업의 경우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 위험도 분석을 목표로 하는 업무분할구조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성과관리체계 적용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⑩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의 병행 부품 국산화 개발 업무 등(국산화 품목의 승인, 국산화 업체의 선정, 국산화 관리 등)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⑪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규격 제정 이후 생산된 시제품으로 야전운용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 제79조(체계개발 내용) ① 주요장비, 부체계 및 핵심부품·구성품과 핵심기술들을 통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핵심부품·구성품으로부터 완성체계까지의 성능을 검증하며, 부체계들 간의 인터페이스 문제 해결과 체계통합의 기술적 위험도를 감소시킨다. 이 경우 핵심부품·구성품은 체계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고장유

법제처 38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영향 및 치명도 분석 결과, 창정비 대상품목 및 부품단종 등을 고려한 사업/체계별 특성에 맞는 핵심부품·구성품 선정 기준을 수립한다. 이 경우, 핵심부품·구성품 선정기준에 따른 시험대상은 상세설계검토 시까지 선정한다.

-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요구조건검토, 체계기능검토, 기본설계검토, 상세설계검토, 시험준비상태검토, 개발시험평가 및 체계기능형상확인, 양산기준설정 등을 위한 물리적 형상확인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 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조성숙도 평가결과 목표 성숙도 수준(제조성숙도수준 8)을 달성하여야 한다.
-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76조제6항에 따라 작성된 등록부품활용계획을 기본설계검토회의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 시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핵심부품・구성품에 대한 시험은 공인시험기관 또는 청에서 승인한 기관(국과연 포함)에서 수행하고, 시험 성적서를 개발시험평가 결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선정된 핵심부품・구성품이 별도의 핵심기술 시험개발과제로 개발된 후 설계변경없이 체계개발에 적용되는 경우는 동 시험개발과정에서 수행된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 ⑥ 청은 제5항에 따른 시험기관 승인 시 ISO/IEC17025, AS9100, ISO 9001 등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지정한 국제규격 또는 이에 준하는 민수규격(한국산업표준(KS), 정부규격) 준수여부를 고려한다.
- **제80조(국방규격의 제정 건의)**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으로 국방규격(안)을 검증하고 운용시험평가에 의한 전투용 적합 판정 후 「표준화 업무규정」의 국방규격 제정절차에 따라 국방규격 제정을 건의한다.
 -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최초시험평가 결과에 의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후 최초양산을 위한 임시규격의 제정건의를 할 수 있다.
 - ③ 복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방규격(안)을 각각 작성하고, 최종 양산 대상으로 선정된 무기체계, 구성장비 또는 구성품을 개발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선정된 무기체계, 구성장비 또는 구성품을 대상으로「표준화 업무규정」의 국방규격 제정절차에 따라 국방규격 제정을 건의한다.
- 제81조(체계개발결과 조치) ① 체계개발단계의 종료시점은 국방규격이 제정된 시점으로 하되, 「혁신법 시행령」제 3조제2항에 따라 시제품이 전력화되는 경우에는 야전운용시험 완료시 또는 전력화 평가 완료시까지 그 종료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 수행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체계개발결과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와 필요한 기술자료 묶음을 통합사업관리팀 및 기품원, 국기연에 제출하며, 제출대상자료 및 세부절차는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을 따른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부서 및 기관에 체계개발결과를 통보하고, 기품원 및 국기연에 체계개발결과보고서의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체계(이하 "DTiMS"라 한다) 탑재결과를 확인한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양산단계의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료와 대외군사 판매(이하 "FMS"라 한다)로 구매한 물품의 기술자료 등을 검토한 후 기품원 및 국기연에 제출하며, 제출대상자료 및 세부절차는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을 따른다.
 - 1. 각종 연구개발보고서

- 2. 관련 시험절차서
- 3. 국산화 추진계획 대비 이행 현황
- 4. 운용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 조치계획
- 5. 기술교범, 기술교범 작성 시 사용한 기술자료, 개발시험으로 획득한 자료 및 기타 참고한 외국의 기술자료
- 6. 고장유형영향 및 치명도 분석 결과, 핵심부품・구성품 선정 기준 등 양산 품질보증 관련 기술분석・평가자료
- ④ 통합사업관리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양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련부서 및 기관에 지원한다.
- 1. 개발시제 정산 원가자료(소프트웨어 포함), 직접비 소요량 및 단가, 전용 기계장치 현황
- 2. 체계부품국산화 이행실적 및 양산부품국산화 추진계획
- 3. 계약 시 고려하여야 할 특수조건 등
- 4. 전력화지원요소에 관한 자료(부품단종관리 계획서 포함)
- 5. 기타 양산에 필요한 관련 자료
- ⑤ 체계개발 결과 발생한 시험평가유지 부품, 시험부품 및 설비, 정비용 특수공구 및 시험장비 등 부산물은 양산 사양과 동일한 품목은 양산 시 활용하고, 양산사양과 다른 품목 또는 복수 연구개발 후 양산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구성장비 또는 구성품은 운용부대, 교육기관 등에 재활용하거나 폐기처리한다. 다만, 공동투자 또는 업체투자로 연구개발한 경우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82조(양산 사업관리)**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또는 양산계획서에 근거하여 양산단계를 최초양산과 후속양산으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양산단계를 최초양산과 후속양산으로 구분하여 수행할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초양산의 최초물량 생산 후 소요군이 실시하는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를 지원하여 제53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③ 최초양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사업추진기본전략,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양산계획서 등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승인된 물량을 말한다.
 - 1. 야전운용시험을 고려한 최소전술단위 운용에 필요한 물량 또는 총 전력화수량의 100분의 10 이내 중 많은 물량
 - 2. 전력화물량이 소량인 사업으로서 최초양산과 후속양산 구분없이 1회의 계약으로 완료되는 사업은 해당 물량 전체
 - 3. 함정건조사업은 후속함 건조계획서 등의 후속함 최초물량(선도함 건조기간에 사업을 착수하는 함정을 말한다)
 - 4. 성능개량사업은 소요결정절차에 따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최초양산사업의 야전운용시험을 고려한 최소 전술단위 운용에 필요한 물량 또는 총 전력화수량의 10% 이내 중 많은 물량(함정 후속함 건조사 업은 최초물량)
 - 5. 전력화시기, 업체생산능력 등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다르게 결정한 물량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또는 양산 착수 전에 생산준비(인력, 시설, 원자재, 시험장비/시설, 기술자료, 생산계획 등)를 확인하는 생산준비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체계개발 종료 시점에 제조

법제처 40 국가법령정보센터

성숙도평가를 수행하는 경우는 생산준비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초 양산품 수락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이 국과연 및 기품원인 경우 시험준비상태(인력, 시험장비/시설, 기술자료 등)를 확인하여 최초 양산품 수락시험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예산반영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2조의2(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① 기반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전력화지원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력화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유지를 위해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된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②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
 - 1. 창정비 성능개량 : 창정비와 성능개량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무기체계의 외주창정비(창정비와 성능개량이 동일 예산년도에 추진되는 사업)
 - 2. 유도탄 수명연장 : 정비/수명주기 도래 유도탄에 대한 기능·성능 개선을 포함한 수명연장(JSOP 등 소요문서에 반영된 사업)
 - 3. 전력화 초기 안정화: 무기체계의 전력화 이후 초기(3년 이내, 3년 초과시 위원회 또는 분과위를 통해 기간 설정) 안정화를 위한 후속군수지원(성과기반군수지원(PBL), FMS내 해외 외주정비 등 업체가 후속군수지원을 하도록 양산계획 혹은 기종결정(안)에 반영된 사업)
 - ③ 그 밖에 세부 절차 및 내용은「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다.
- 제83조(최초양산 기술지원 및 품질보증)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에 의해 개발된 무기체계의 최초양산을 위해 국과연의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기술지원 비용을 미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 국과연의 기술지원내용은 운용시험 보완요구사항 후속조치, 형상변경, 야전운용시험, 전력화평가, 유도무기 품질인증사격시험에 대한 보완조치, 규격수정 등을 말한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초양산 계약 체결 후 필요한 경우 기품원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주관기관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협조한다.
 - ④ 기품원은 최초양산 시 품질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연구개발주관기관에 개발인력 파견을 포함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제84조(양산계획서 확정 및 계약)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또는 최초시험평가 결과 잠정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 국방중기계획, 양산원가, 소요군에서 제출한 무기체계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야전운용시험·전력화평가계획을 근거로 양산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서 및 기관, 업체에 통보한다.
 - 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 전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청 관련부서, 합참, 소요군, 기품원, 신속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양산계획서를 보완한다. 이 때 관련부서 간 중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관련부서장 및통합사업관리팀장이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계개발 완료 후 조기계약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산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조달준비 요구를 할 수 있다.

법제처 41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 사업추진기본전략에 체계개발단계와 양산단계를 통합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체계개발기본계획에 시험평가결과 "전투용 적합" 또는 "잠정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전투용 부적합 판정시에는 부결 조치) 양산계획(안)을 포함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산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 ⑤ 계약부서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계약체결을 의뢰받아 계약을 할 경우에는 양산 계획물량을 형상별 또는 모델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계약 및 기술요구조건 설정을 위하여 통합사업관리팀, 소요군, 국과연 및 기품원과 사전에 협조한다.
-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확정된 양산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양산계획을 수정하며,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발전 추세 및 군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양산계획서에 기술변경 필요성을 명시하고 관련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 ⑧ 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개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최초시험평가 결과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체계개발 종료 전 최초양산을 착수할 수 있다.

제3절 함정 무기체계

- 제85조(함정사업의 원칙) ①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은「혁신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단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단계, 후속함건조단계로 구분하며,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함정에 탑재된 통합전투기능, 항해·조함기능, 통신기능, 기관·손상통제기능 등과 관련된 체계를 유기적으로 통합 및 최적화하여 통합전투성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선행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법」제2조제5호나 목에 따른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 ③ 국내 연구개발로 획득 추진중인 장비를 함정에 탑재하고자 할 때는 주요성능에 대하여 실선시험을 통해 성능 충족을 입증한 후 함정에 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 연구개발 장비와 탑재 대상 함정이 동시에 개발 중(성능개량사업 포함)인 경우, 최초운용시험평가(육상, 유사환경 등)로 성능 충족을 확인한 후 함정에 탑재하고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함정의 생존성, 안전성 보장을 위해 공인전문기관의 인증이 필요한 항목을 소요군, 기품 원과 협의하여 형상식별서에 포함시키고, 기품원은 이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의하여 품질보증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⑤ 함정과의 체계연동 및 통합이 요구되는 신규도입 관급장비(연구개발 장비 포함)는 함정에 설치하고 성능확인이 완료되는 시기(기품원 검사 합격일)를 "납품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함정 설치 일정상 납품일 이전에 장비의 조선소 인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조선소 장비 인도 약정일을 계약특수조건 또는 협약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내용을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함정 플랫폼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함정에 탑재되는 모든 무기체계, 장비, 설비, 구성품, 소프트웨어 등간의 원활한 체계통합을 위해 제56조제14항을 따른다.

법제처 42 국가법령정보센터

-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함정 특수성능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과연 또는 기품원과 협의한 후 국과연 또는 기품원 주관으로 특수성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함정사업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함정 특수성능 기술의 유지발전업무는 국과연 또는 기품원 주관으로 수행한다.
- ⑧ 잠수함의 경우에는 사업 단계별 체계적인 감항성 관리를 수행하고 감항성관리위원회를 통해 감항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⑨ 기품원은 영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세부 절차는 「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다.
- ⑩ 기타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한다.

제86조(함정사업의 절차) 함정사업의 단계별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요기획단계: 소요군은 합참에서 장기소요를 확정할 경우 개념설계(체계통합 개념 및 요구능력 포함)를 수행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념설계 진행 중 별표 제11호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요군은 개념설계 결과 및 운용요구서를 방위사업정책국장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 2. 선행연구단계: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장기전력 또는 중기전력 신규소요로 결정된 함정 무기체계에 대한 개념설계의 진도를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수행하며, 선행연구 조사·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념설계 결과를 국기연에 통보한다.
- 3. 기본설계단계: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전운용성능 및 운용요구서를 근거로 소요군 요구조건을 구체화하고, 함정의 제원 및 성능, 탑재체계/장비의 배치, 사양, 연동 등을 확정하며, 체계요구조건검토, 체계기능검토를 포함하여 기본설계검토를 수행하고, 체계/부체계설계기술서, 건조사양서, 재료목록 등의 산출물을 작성한다. 이때 기본설계는 예비설계와 계약설계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소요군은 각 설계단계별 결과에 대해 요구조건 충족여부, 운용성 등을 검토하고, 잠정 전투용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해 기본설계 결과에 대한 기본설계시험평가를 수행한다.
- 4.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단계: 기본설계 시험평가를 통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통합사업관리팀 장은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선도함 건조 및 운용을 위한 세부 기술보고서 및 공작도면 등 함건조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자료 작성, 운용/정비 교육, 함운용 지침 및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 등을 통해 선도함을 건조한다. 상세설계 기간 중 상세설계검토를 수행하고 잠정형상결정(DDR, Design Decision Review)을 실시하여 선도함 착공과 후속함 착수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형상은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하여 전투용 적합 판정 후 정식규격 제정을 통해 결정한다. 소요군은 선도함 건조과정에서 현장관리에 협력하며 선도함 건조 결과에 대한 전투용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해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한다.
- 5. 후속함 건조단계 : 기본설계 시험평가 결과 잠정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 시, 선도함 건조절차를 준용하여 후속 함을 건조하는 단계이며, 전력화일정을 고려하여 선도함 건조 간 후속함 건조를 착수할 수 있다.

제87조(기본설계기본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근거로 별지 제9호서식을 준용하여 기본설계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별지 제10호서식을 준용하여 기본설계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 43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기본계획에 구매계획이 반영된 관급 구매장비는 사업추진 시 별도의 구매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도함 건조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기본설계 기간 중 착수가 필요한 도급 탑재장비에 대한 사업추진일정도 기본설계실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국과연 또는 신속원으로 하여금 기본설계실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기본설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확정 및 수정, 계약 또는 협약 체결, 계약 또는 협약 변경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일반 무기체계 탐색개발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27조제8항에 따라 등록부품활용계획을 제출한 경우 기본설계실 행계획서의 연구개발 계획을 작성할 때 등록부품활용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등록부품활용계획에 대해 관계기관(방위산업진흥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88조(기본설계 수행)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사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등)를 식별하고,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요구조건(작전운용성능, 운용요구서, 체계통합요구조건 (탐지체계와 무장체계를 포함한 교전성능, 인력 및 공간운용, 비용 최적화 등) 등을 포함한다.)을 체계요구조건과 함정사업관리에 필요한 제반 요구조건(이하 사업관리요구조건)으로 구분하여 분석 정리하고, 체계요구조건검토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단, 이때 확정하지 못한 요구조건은 체계기능검토회의를 통해 확정하되 체계요구조건과 사업관리요구조건에 대한 추적성을 보장하고 체계요구조건에 대한 검증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요구조건검토회의 이후 식별된 요구조건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적 검토는 물론, 타 체계와의 영향성과 비용 및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치하고, 검토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 수행 중 체계요구조건검토, 체계기능검토, 기본설계검토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기술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되, 청내 관련부서(소속기관 포함), 소요군(운용・정비・관리요원 포함),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관련연구소 및 업체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설계/기술검토위원회를 운영할 수있다. 이 경우 기품원은 품질보증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양산관점의 품질보증 관련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과 협의하여 기본설계 주요 도면, 보고서 및 탑재장비 사양서 목록 등을 포함한 체계/부체계설계기술서를 확정하여, 작전운용성능과 운용요구서를 구체화한다. 다만, 전투근무지원정은 선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부체계설계기술서 작성여부를 운용요구서에 명시하여 수행한다.
 - 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도급장비(연구개발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확보되는 장비를 말한다.) 기종결정을 위한 요구사양(체계통합 요구 조건 포함)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과 소요군, 관련기관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이때,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소요군과 관련기관이 기술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면, 보고서 등 참고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⑥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본설계 수행 중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일정 준수를 위해 납품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도급 탑재장비에 대해 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법제처 44 국가법령정보센터

-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함수품 목록을 제출받아 관련부서 및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종합한 후 함수품목록(안)을 기본설계 종료시까지 확정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본설계 수행 중 함정톤수 확정(안)을 소요군과 협의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 ⑧ 기본설계에 대한 시험평가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
- ⑨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본설계가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기본설계 및 시험평가 결과 등을 통합사업관리팀 장에게 제출한다.
- 제89조(기본설계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 결과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로의 사업추진 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추진기본전략 중에서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 결과(기본설계시험평가 결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시) 기본설계 주관기관이계속하여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참여업체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0조(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기본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과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기본계획(별지 제12호서식)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실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군,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신속원 등으로부터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②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확정 및 수정, 계약 또는 협약의 체결, 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일반 무기체계 체계개발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 제91조(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수행)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본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상세설계검토 등을 통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수행하여야 하며, 함정 통합 전투성능 극대화를 위한 탑재체계와의 체계통합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도함 착공과 후속함 착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정형상결정과 생산준비검토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잠정형상결정은 도면, M&S(가상함정 등 포함)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되 상세설계검토와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함수품 목록을 제출받아 소요군 및 관련부서 등의 검토의견을 종합한 후 해당 사업부장이 주관하는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용시험평가 착수 이전 함수품 구매목록을 확정하여야 한다. 함수품의 획득은 관급이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품목(FMS 등)을 제외하고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계약에 포함하여 도급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상세설계검토 및 잠정형상결정 이후 형상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형상관리절차에 따라수행하여야 한다. 기품원은 확정된 형상식별서를 기준으로 검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품질보증활동 계획 및 분기별 활동 결과를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잠정형상결정을 실시하여 선도함 착공과 후속함 초도물량 착수 여부를 결정하며, 운용시험평가 전투용 적합 판정 결과에 따라 최종 형상을 확정한다.

법제처 45 국가법령정보센터

-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이 선도함 진수식 전후 검토위원을 구성하여 업무수행 시 적극 협조하고, 후속조치를 건조업체와 협조한다. 또한 함 건조 중 소요군에서 제기된 개선보완 요구사항(설계오류 포함) 검토 후 보완가능한 사항은 기품원과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하고 기품원은 운용시험평가 착수 전까지 수정 및 보완토록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 ⑦ 선도함 개선보완 요구사항 중 자재수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 등 선도함 건조기간 중 처리가 제한되는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인도 후 별도의 계약으로 조치할 수 있다.
- ⑧ 시험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따르고, 통합사업관리팀장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소요 군 주관으로 수행되는 운용시험평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⑨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의 병행 부품 국산화 개발 업무 등(국산화 품목의 승인, 국산화 업체의 선정, 국산화 관리 등)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92조(후속함 건조) ① 후속함 건조는 기본설계 시험평가 결과 잠정 전투용 적합을 받은 경우에 한해 선도함 전력화 이전에 사업 착수할 수 있으며, 상세설계검토 및 잠정형상결정 시 선도함 건조업체가 함정의 성능을 보장할수 없을 때에는 선도함 운용시험평가를 통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후 후속함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84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함정사업 설계개선비, 탑재 장비 및 무기체계 획득방안, 후속함의 최초 및 후속물량 등을 포함한 후속함 건조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필요시수정할 수 있다.
 - ③ 후속함 건조업체를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수상함 및 잠수함: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2. 전투근무지원정 :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후속군수지원 등을 고려하여 후속함의 탑재 장비는 선도함과 동일기종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속함 건조업체가 탑재장비 선정 시 선도함과 다른 기종으로 탑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사업 관리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후속함 건조계약 체결 이후에 도출된 개선요구사항의 후속조치 결과를 소요군에 통보한다.
 - ⑥ 후속함 함수품 획득은 선도함과 동일한 사양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도함 대비 함수품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장이 주관하는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운전 착수 이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후속함 건조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이후 또는 후속함 건조 착수 전에 생산준비(직영 /외주인력, 시설, 원자재, 시험장비, 기술자료, 생산계획, 적격심사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이행여부 등)를 확인하는 생산준비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동일 업체가 동일 함정을 연속하여 수주하는 등의 경우 사업의 특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산준비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⑧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생산준비검토 회의 기간 중 소요군・기품원・신속원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제처 46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93조(수상함 시운전)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후속함 건조업체로 하여금 함건조 완료 이전에 시운전 준비상태 점검(TRI: Trial Readiness Inspection) 계획 및 시운전 평가서를 포함한 시운전계획서(안)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 소요군 및 기품원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운전계획서에는 시운전에 필요한 무기ㆍ시설의 범위, 운용방안, 소요예산, 기간, 시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재활용 장비는 소요군과 시운전 방법 및 내용을협의하여 시운전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및 기품원에 후속함 건조업체에서 제출한 시운전계획서(안)의 검토를 요청하여야하며, 소요군 및 기품원은 검토의견을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이 경우 소요군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군의 지원사항(장비·탄약 등을 말한다)과 주요 시운전평가사항 등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시운전계획서를 확정하여 소요군, 기품원 및 건조업체에 통보한다. 이 때 탑재장비 운용시험평가 시 합격된 항목은 시운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운전 준비상태 점검(TRI)을 조정·통제하여야 하며, 시운전 착수 이전에 시운전 준비상 태 점검 결과를 소요군 및 기품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소요군은 확정된 시운전 평가서를 기준으로 시운전(정박/항해)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 및 기품원에 제출한다.
 - ⑥ 기품원은 정부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며, 1단계(입고 및 설치검사) 품질보증결과 등 시운전(정박/항해)에 필요한 자료를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재활용 장비의 경우 소요군 주관으로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며, 1단계(입고 및 설치검사)에서 4단계(항해시운전)까지 필요한 기술지원(STW, Linking) 및 성능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한다.
 - ⑦ 후속함 시운전은 정박 및 항해시운전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시운전 준비 및 시운전 단계별 실시 내용은 다음 각 호과 같다.
 - 1. 1단계(입고 및 설치검사): 설치검사, 장비시동시험, 장비작동 및 기능시험 등
 - 2. 2단계(시운전 준비상태 점검) : 1단계 입고 및 설치검사 결과 확인, 장비 작동 및 기능시험 등 준비상태 확인
 - 3. 3단계(정박시운전) : 부두에 정박하여 수행하는 시운전으로, 함에 설치된 장비·설비, 체계 등의 정상작동여부 및 항해시운전 준비상태를 입증하는 시운전
 - 4. 4단계(항해시운전): 항해 중에 실시하며 정박시운전과 연계되는 시운전으로 함 성능, 장비성능, 장비연동 및 체계성능 등을 확인하는 시운전
- 제93조의2(잠수함 시운전) ① 후속함 건조업체는 함건조 완료 이전에 건조자시운전 평가서를 포함한 건조자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및 소요군에 제출한다.
 - ② 후속함 건조업체는 건조자시운전 결과를 포함한 인수시운전 계획(안)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및 소요군에 제출한다. 이 경우 계획(안)에는 시운전에 필요한 무기·시설의 범위, 운용방안, 소요예산, 기간, 시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소요군은 후속함 건조업체에서 제출한 인수시운전 계획(안)을 검토·보완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이 경우 소요군은 인수시운전에 필요한 소요군의 지원사항(장비·탄약 등을 말한다)과 주요 시운전평가사항 등 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제처 47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수시운전계획서를 확정하여 소요군, 기품원 및 업체에 통보한다.
-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후속함 건조업체로부터 항목별 시운전 평가 관련자료를 받아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인수시운전 평가서를 확정하고, 이를 소요군, 기품원 및 건조업체에 통보한다. 이 때 탑재장비 운용시험평가시 합격된 항목은 인수시운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⑥ 소요군은 제5항에서 확정한 인수시운전 평가서를 기준으로 인수 시운전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 및 기품원에 제출한다.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인수시운전 계획서와 평가서는 필요에 따라 동시에 작성할 수 있다.
- ⑧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운전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설비 등을 국·내외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⑨ 기품원은 건조자・인수 시운전에 참관하여 결과를 확인하고,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특성과 여건에 따라 효율적 시운전 수행을 위해 건조자 시운전과 인수시운전을 병행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소요군, 건조업체 등) 검토회의 등을 통해 시운전 병행기간, 병행 평가 종목, 수행방법 등을 확정한다.
- 제94조(함정인도)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도함에 대한 운용시험평가 결과와 기품원의 검사조서를 확인하여 함정을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소요군에 인도한다. 다만, 함정건조 일정 등이 변경되어 인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대책, 인도가능시기 등을 소요군에 사전 통보한다.
 - ② 후속함은 시운전 결과와 기품원의 검사조서를 확인하여 함정을 함 건조업체로부터 소요군에 인도하며, 통합 사업관리팀장은 시운전 결과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검토한 후 시정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후속함 건조업체에 시정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함정에서 발생한 인도후수리와 관련한 업무를 소요군 및 기품원과 협조하여 수행한다.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 시운전 및 하자보증기간에 발생한 하자사항을 건조업체가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계획을 소요군과 협의하되, 장기간 소요되는 미해결사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잠정인수 및 전력화 할 수 있다. 다만, 하자사항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등에서 정하는 제반 후속조치는 함정사업부에서 조치 및 추진하고 소요군에서 협조한다.

제4절 전장관리정보체계

- 제95조(사업집행의 원칙)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장관리정보체계 개발 시 컴퓨터 및 통신망 등 기반체계의 능력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기반체계의 신설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기반체계 및 소프트웨어를 일괄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력화단계의 기반체계 획득을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 ② 외국군 정보체계와 연동하는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해당국 정부와 기관 간 연동범위 등에 대한 약정(MOA, MOU 등)을 먼저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기 사업추진 및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과 약정 체결을 병행할 수 있다.

법제처 48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의 계약업무 수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④ 기타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한다.
- 제96조(연구개발 절차) ①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은「혁신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은 탐색개발단계·체계개발단계·전력화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 ② 탐색개발단계의 주요 수행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구체화한 의견과 관련자료를 근거로 체계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와 기능을 식별하고,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정의하며, 예비 체계요구사항명세서와 체계설계기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 1. 연구개발대상 전장관리정보체계의 작전운용성능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
 - 2. 소요제기기관에서 제출한 당해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및 운용절차
 - 3. 전장에서 무기체계간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 ③ 체계개발단계의 주요 수행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체계요구사항명세서 및 체계설계기술서를 기준으로 체계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각각을 구성하는 요소를 식별하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조를 설계한다.
 - 2. 체계간 또는 부체계간의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
 - 3.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각 컴포넌트의 개발, 하드웨어 도입 및 제작과 체계통합을 통하여 운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 4. 체계개발의 각 과정별 수행업무를 검토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요구사항검토(SSR, Software Specification Review), 기본설계검토, 상세설계검토, 시험준비상태검토 등을 소요군, 신속원 및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수행한다.
 - 5. 개발결과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판정한다.
 - ④ 전력화단계의 주요 수행내역은 기반체계 구축 후 체계개발이 완료된 전장관리정보체계의 관련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소요군이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여 전력화하는 것이다.
 -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효율적인 연구개발 추진을 위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단계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수립할 때에 그 단계의 생략 또는 통합여부를 포함하여 야 한다.
- 제97조(탐색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로 하여금 탐색개발실행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과연에 탐색개발실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탐색개발실행계획에 대한 확정, 수정 및 계약·협약 체결 등은 일반 무기체계사업의 탐색개발실행계획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따른다.

법제처 49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8조(탐색개발 수행)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에 근거하여 탐색개발을 수행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서에 따라 체계개발단계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지정된 경우 탐색개발 단계의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체계개발단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인력을 탐색개발단계에 투입할 수 있다
- 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요구서를 토대로 예비 체계요구사항명세서를 작성한다.
- ④ 합참은 통합사업관리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력하여 탐색개발단계의 운용성확인계획을 국방부 승인절차를 거쳐 수립하여 통합사업관리팀,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소요군에 통보한다. 이 경우 운용성확인계획의 수립은 연구개발 시험평가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 제99조(탐색개발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이 완료된 경우 탐색개발결과보고서(별지 제 11호서식)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를 합참 및 소요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로 작성되는 체계요구사항명세서와 체계설계기술서에 대하여 소요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소요군이 동의한 체계요구사항명세서와 체계설계기술서를 근거로 체계개발을 추진한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 연구개발로서의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추진기본전략 중에서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혁신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결과에 따라 탐색개발의 주관기관 및 시제업체가 계속하여 체계개발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탐색개발 참여업체로 하여금 체계개발을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0조(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미래 기술수준 예측과 신규무기체계 장착운영을 위한 진화적 개발전략, 사업의 제약조건(기간ㆍ비용 등을 말한다), 부품의 단종 및 향후 성능개량 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체계개발실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과연으로 하여금 시제개발계획 또는 시제업체의 시제생산계획을 첨부한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과연이 시제개발계획에 따라 시제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제업체로부터 시제생산계획을 제출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받았을 경우이를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 ④ 체계개발실행계획의 확정, 수정 및 계약·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 일반 무기체계에 대한 체계개발실행계획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따른다.
- **제101조(체계개발 수행)**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확정된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체계개발을 수행하도록 한다.
 -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요구서를 토대로 체계요구사항명세서를 작성한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력화단계의 품질보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개발 단계부터 기품원이 품질보증활동에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법제처 50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02조(체계개발결과 조치)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 단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체계개발결과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와 필요한 기술자료 묶음을 해당 사업부에 제출하고, 해당 사업부는 청내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에 체계개발결과를 통보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 및 전력화단계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후 기품원에 이관한다.
 - 1. 관련 연구개발보고서
 - 2. 사용자 지침서, 운영 매뉴얼 등의 사용자문서
 - 3. 계획서, 절차서, 결과보고서, 모의시험환경 등 연구개발 중의 시험관련 문서
 - 4. 운용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 조치계획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의 결과로 획득한 전장관리정보체계 및 관련 기술자료를 소요군에 이관하여 전력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체계개발단계의 종료시점은 국방규격이 제정된 시점으로 한다.
- 제103조(전력화 수행)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종료 후 체계의 확대설치를 위하여 별도의 양산을 추진할 경우에는 일반 무기체계 양산절차를 따르되.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종료 후 별도의 양산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전장관리정보체계를 소요군에게 인도하는 전력화 절차를 수행한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력화단계의 품질보증업무를 기품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104조(형상관리) ① 체계개발 단계에서의 형상관리는 해당 사업부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
 - ② 연구개발주관기관 등은 형상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한다.
 - 1. 사업명
 - 2. 변경사항 제목
 - 3. 변경사항 발생 사유
 - 4. 변경요청의 유형
 - 5. 변경사항 또는 문제점
 - 6. 변경이 발생한 구성항목
 - 7. 변경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형상변경 소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변경내용・규모・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체계요구사항명세서 또는 체계설계기술서의 변경은 형상통제심의회를 구성하여 그 결정에 따르되, 소요군이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 1. 변경요청 배경 및 실현가능성 여부
 - 2. 체계의 성능 및 타 체계와의 상호운용성에 미치는 영향

- 3. 비용증감, 계약 등에 미치는 영향
- 4. 요구성능 및 설계변경이 일정계획에 미치는 영향
- 5. 교육훈련, 운용환경에 미치는 영향
- 6.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른 영향요소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진부화를 방지하고 진화적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제안되거나 선정된 상용제품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05조(감리)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수행업무에 대한 감리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감리용역업체)으로 하여금 감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탐색개발 · 체계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외부 전문 기관 선정 및 감리용역 수행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내역을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감리계획 수립, 시행 및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시 체계간 상호운용성 관련사항에 대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과 혐의한다.
 - ④ 감리에 관한 세부사항은「전자정부법」제57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정보시스템감리기준」 및「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을 따른다.
- 제105조의2(전문인력 활용)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정부법」제64조의2에 따른 외부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탐색개발기본계획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에 '전문인력 활용계획'을 반영하고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106조(국방 M&S체계 연구개발 사업관리) ① 사업본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소요가 결정된 M&S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제32조에 의하여 통합사업관리팀을 구성하고, 필요 시 개발관리를 포함하여 사업추진에 관한 일부 업무를 합참, 소요군, 국방관련 연구기관(국과연, 한국국방연구원, 신속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의하여 합참, 소요군 및 국방관련 연구기관이 수행할 사업관리, 사업집행방법 등에 관한 업무를 사업추진기본전략 등에 반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세부절차 및 기준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합참, 소요군, 국방관련 연구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한다.

제5절 기술협력생산

- 제107조(기술협력생산사업의 원칙) ① 기술협력생산절차는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기 개발된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획득을 위하여 외국 원제작업체와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생산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 1. 국내 기술발전에 기여하여 국산화율 향상

법제처 52 국가법령정보센터

- 2. 국내생산에 따른 국내 부품생산 납품단가가 국외구매 가격보다 저렴하여 총수명주기비용의 절약
- ② 기술협력생산사업은 국내업체가 외국업체와 사전협상을 통해 대상기종을 선정한 후 제안서(기술협력생산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 결과에 따라 국내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의하되, 시험평가의 시기 및 기준은 해당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하고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무기체계 구매사업의 기종결정단계에서 기술협력생산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0조에 의한 구매계획서에 따라 기술협력생산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대상기종 선정을 구매사업의 기종결정결과로대체할 수 있으며, 제109조의 기술협력생산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8조(국내업체 선정) ① 기술협력생산을 위한 국내업체 선정은 연구개발사업 업체선정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제107조제1항의 사업추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개 요
- 2. 대상무기체계
- 3. 작전운용성능
- 4.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 5. 협상 주관기관 및 계약대상업체
- 6. 기술협력생산 방법 및 조건
- 7. 협상방법・절차, 기술협력생산조건, 기술협력생산계획 등 협상방향
- 8. 절충교역조건(절충교역 추진 시)
- 9. 전력화지원요소(부품단종관리 계획 포함)
- 10. 시험평가지침
- 11. 품질보증(국제품질보증협정을 포함한다)
- 12. 가격 및 인도조건, 면허 허용 범위, 원제작사 부품 공급조건, 성능보장, 재면허 허용, 이견발생 통제절차 등 계약조건
- 13. 기술이전조건, 기술지원교육 등 협력기술관련 사항
- 14. 외국생산업체 제공 기술수준 및 파급효과
- 15. 국산화지침(등록부품활용계획 제출 명시)
- 16. 표준화에 관한 사항
- 17. 협상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8. 그 밖에 용어의 정의, 대북판매금지, 가격정보획득 등
- ② 계약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국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협력생산사업을 관리한다.
- 제109조(기술협력생산계획서 작성 및 승인)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내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술 협력생산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도록 한다.

법제처 53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업체가 제출한 기술협력생산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다음 각 호의 기관·부서(이하 이 조에서 "관련기관" 이라 한다)에 의뢰하고, 관련기관은 검토의견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 1. 방위사업정책국: 상호운용성 보장여부
- 2. 기획조정관: 재원의 가용여부
- 3. 계약부서: 기술협력생산 양해각서 또는 계약서
- 4. 방위산업진흥국: 국산화 관련사항
- 5. 기품원: 품질보증 관련사항
- 6. 국기연: 부품국산화 중복개발 여부 검토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기술협력생산계획서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련기관 및 해당 국내업체에 통보한다.
- 제110조(사업관리)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협력생산계획서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내업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비용관리, 일정관리, 범위관리, 품질관리, 형상관리, 위기관리 등을 수행한다.
 - ② 신속원은 소요군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기술협력생산계획서를 검토하고 양산단계의 주요 기술변경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 ③ 기품원장은 기술협력생산으로 생산된 양산품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한 양산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한다.

제6절 진화적 연구개발

- 제111조(진화적 개발 적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영 제22조제2항과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진화적 작전운용성 능으로 소요결정된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진화적 연구개발 사업관리절차를 적용하며, 이 경우에는 점증적 개발 방식을 적용한다.
 - ② 점증적 개발이란 기술성숙도의 예측이 가능하여 단계적으로 설정된 작전운용성능을 기반으로 목표 작전운용 성능을 여러 단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증분 개발할 수 있을 경우 증분 개발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목표 작전운 용성능을 달성하는 개발 방식을 말한다.
 - ③ 진화적 연구개발 절차는 초기 증분 개발, 후속 증분 개발, 목표 증분 개발, 양산 및 증분별 성능개량 순으로 진행한다.
- 제112조(사업관리 절차) ① 진화적 연구개발을 위한 업체선정, 체계개발실행계획서 확정 및 계약·협약, 증분별 사업관리 기본절차 등 진화적 연구개발 절차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를 준용한다.
 - ② 진화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혁신법 시행령」제3조 및「혁신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초기 증분개발사업을 수행한 업체가 후속 및 목표 증분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3조(초기 증분 개발)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56조의 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하여 초기 증분 작전운용성능을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체계설계,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국방규격 제정 순으로 개발하며, 초기 증분 양산 물량은 소

법제처 54 국가법령정보센터

- 요군의 전력화 계획을 따른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발시험평가 평가 결과 '기준충족' 또는 최초시험평가 결과 '잠정전투용적합' 판정을 받거나 기술성숙도 평가를 통한 필요 기술 확보가 인정되는 경우 후속 증분 개발 단계전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한다. 이 경우 초기 증분 개발 결과를 반영하여 합참에 증분별 작전운용성능의 최신화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3조의2(단계전환 방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단계전환을 결정하기 위해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기획 · 관리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위해 연구개발 주관 기관에게 기술성숙도평가 결과가 포함된 진화적 연구개발 단계전환실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하여야 한다.
- 제114조(후속 및 목표 증분 개발)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56조의 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하여 후속 및 목표 증분 작전운용성능을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며, 직전 단계 증분 개발결과와 운용시험평가 및 운용 간 보완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발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각각의 증분 개발이 완료되면 직전 단계에서 완성된 국방규격을 개정한다.
- **제115조(양산)**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목표 증분 개발이 완료되면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절차에 준용하여 양산을 수행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이전 단계 증분 개발 후 전력화된 물량이 목표 작전운용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성능개량을 포함하여 양산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절 기타 연구개발사업

- 제116조(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① 핵심기술 연구개발은 국내 독자 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 시 해외 기술과 부품의 적용 및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의 연구개발 단계별로 국방기술 보호국장 또는 사업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핵심기술의 시험개발은 무기체계개발에 우선하여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기적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중첩되는 경우에는 적용무기체계의 탐색개발 또는 체계개발에 포함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 제117조(시범사업) ① 법 제17조의2에 따라「혁신법」제2조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법 제 15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범사업의 세부절차에 관하여는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다.
 - ③ 시범사업을 거쳐 소요가 결정된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성능입증시험 결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해 선행연구를 거치지 않고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한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39조제10항의 절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법제처 55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18조(업체자체개발사업) ① 업체가 향후 군소요 및 수출소요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투자에 대한 수익·손실을 계산하여 무기체계를 연구개발(이하 "업체자체개발"이라 한다)할 경우 청은 업체의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업체자체개발 종료전에 군 소요가 확정되고 해당 업체의 무기체계가 획득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그 개발사업은 업체투자 연구개발사업 또는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 전환되거나 신속한 획득이 가능할 경우에는 신개념기술시범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업체자체개발이 완료되어 완제품이 생산된 경우에는 무기체계 구매사업의 절차를 따른다.
 - ④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대제전" 등을 통하여 업체가 자체개발한 신기술을 소개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4항에 따라 소개된 기술 중 우수기술에 대하여 핵심기술 후보과제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절 협약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 **제118조의2(적용범위)** 이 절은「혁신법」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같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118조의3(협약 적용대상) ①「혁신법」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약을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혁신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발단계 사업
 - 2. 「혁신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계개발단계 사업 중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 사업으로서, 연구개 발비(체계개발에 드는 개발비용의 합계를 말한다)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업
 - 3. 「혁신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무기체계 특성상 시제품을 전력화할 수 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 1항 각 호의 단계를 거칠 수가 없는 사업 중에서 협약으로 추진하기로 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

제118조의4(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출연금"이라 함은 협약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 2.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3. "사업비"라 함은 협약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
- 4. "성실수행평가위원회"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청장의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실패사업에 대한 성실수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 5. "협약심의위원회"란 협약사업에 대한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제118조의5(사업 공고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 및「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약사업의 공고 및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절차를 수행한다.

법제처 56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공고 시 사업비는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 2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기준가 산정 방식으로 정하여 공고하며,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을 명시한다.
- 제118조의6(협약의 체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과 표준협약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협상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계약부서장에게 협약 체결을 의뢰한다. 이 경우 협약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약 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118조의7(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출연금을 지급한다.
 - ②「혁신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비율 및 방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현물로 부담한다. 이때, 부담의 시기는 매년 정부출연금 지급 요청 전으로 하며, 현물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현물 부담 내역서를 제출한다.
 - 1. 민간부담금이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 2. 연구시설・장비비
 - 3.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
 - ③「혁신법 시행령」제5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은「혁신법 시행령」제5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56조제9항에 따른 사업수행평가 실시 결과 협약 이행이 미진할 경우 출연금의 10%를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⑥ 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제118조의8(협약의 변경)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혁신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부서장에게 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1.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3. 협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협약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협약사업에 대한 평가·점검결과 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이 사업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 5. 제7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탐색개발실행계획 또는 체계개발실행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 6. 방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등 협약에 대한 평가 결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② 계약부서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변경사항 확인 후 협약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57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비용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시에는 비용변경의 사유가 물가상승, 개발형상변경의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에서 타당성을 판단하되, 이외의 사유로 비용상승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시에는 협약심의위원회에 심의하여 결정한다.
-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초과 제안사항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초과제안 사항이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에 미친 영향을 협약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사업의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단,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비용분석을 통해 초과제안한 사항 중 미이행분에 대한 사업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18조의9(협약의 해약)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혁신법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부서장에게 협약의 해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이미 달성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 2.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 3.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의하여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 5. 협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평가 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청장이 사업 중단조치를 한 경우
 - 6.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7.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 8.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 9.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 10. 방위산업기술보호 및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11. 제71조제1항 또는 제77조제4항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 12. 제118조의8제4항에 따라 협약심의위원회가 중단을 결정한 경우
 - ② 제1항의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부서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공문 등의 문서로 협약의 해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도달함으로써 협약의 해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연구개발주관기관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협약의 해약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③ 계약부서장은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사업비의 집행 정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8조의10(사업비의 정산)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목적물 납품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부서는 해당 사업본부 원가부서에 사업비 정산을 의뢰하며, 해당 원가부서는 방위산업진흥국(원가관리과)의 협조를 받아 사

법제처 58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비를 정산한다.

- ② 계약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사업비를 확정하고, 협약금액을 변경한다.
- 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 후 집행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④ 사업비의 정산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제118조의11(최종평가) ①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76조에 따른 운용성 확인에 따른 탐색개발사업 최종평가 시성공사업과 실패사업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공사업 : 운용성평가 결과 다음 연구개발(체계개발) 단계로 전환 가능 판정
 - 2. 실패사업 : 운용성평가 결과 다음 연구개발(체계개발) 단계로 전환 불가 판정
 - ②「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61조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에 따른 체계개발사업 최종평가 시 성공사업과 실패사업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공사업: 개발시험평가 결과 기준충족 및 운용시험평가 결과 전투용적합 판정
 - 2. 실패사업: 개발시험평가 결과 기준 미충족 또는 운용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부적합 판정
 - ③ 최종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8조의12(협약심의위원회) ① 방위사업청 협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7명)의 위원과 2명의 간사로 구성하며, 위원회 구성원은 아래 각호와 같다.
 - 1. 위원장: 국방기술보호국장
 - 2. 상임위원: 감독지원담당관 법무심사파트리더, 기술정책과장
 - 3. 비상임 위원 : 청본부, 각 사업본부의 과·팀장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의안건 상정부서의 과·팀장은 심의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4. 행정간사 : 기술정책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 5. 법무간사 : 감독지원담당관실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 ② 계약부서장은「혁신법」제9조에 따른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부서 의견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행정간사에게 협약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
 - 1.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에 대한 심의안
 - 2. 제재사유 발생에 대한 입증자료
 - 3. 기타 협약 관련서류 사본(협약서 및 입찰관련서류, 협약이행독촉근거서류 등 참고자료)
 - ③ 협약심의위원회 행정간사는 개최결과를 계약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계약부서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혁신법」제9조에 의한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청장(계약부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 ⑤ 협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청 훈령인「협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하여 정한다.
- 제118조의13(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① 청장은「혁신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같은 법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약심의위원회에서 참여제한기간을 정하여 2년(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를 제한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둘 이상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한다.
 -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방부장관 및 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5.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6.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8.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9.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10.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11.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 12.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활용한 연구시설・장비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 ② 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혁신법 시행령」별표 1 사업비 환수사유별 환수 세부기준에 따라 협약심의위원회에서 환수금액을 정하여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때해당 사업이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총 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 ③ 청장은 제1항 제10호와 제11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이를 통지한다. 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 ⑤ 계약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분기별로 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7조제11항에 따른 제안서의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 ⑦ 청장은 협약이 해약된 경우 또는 협약 종료 후에도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될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8조의14(제재부가금 부과) ① 청장은「혁신법」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라 협약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 ② 계약부서장은「혁신법」제9조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수납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계약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혁신법」제9조제4항에 따라 국 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18조의15(성실수행평가) ① 성실수행평가는 「혁신법」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협약사업 중 제118조의9제1항제5호에 따른 중단 사업과 제118조의11에 따른 평가 결과 실패 사업으로 판정된 경우 실시할수 있다.
 -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중단 또는 실패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28호 서식을 작성하여 성실수행평가를 계약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부서장은 기품원으로 하여금 요청받은 성실수행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성실수행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구성안
 - 2. 성실수행평가위원회 일정
 - 3. 성실수행평가위원회 평가표 등
 - ③ 성실수행평가를 요청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성실수행평가 7일 전까지 방위사업청 및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2호 각목 및 제3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제1호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연구개발사업 수행내용 및 별표 제13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자료 및 연구개발주관기관 소명자료
 - 2.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증빙(근거)자료
 - 가. 기술검토회의결과, 사업관리회의 회의록, 공문, E-mail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 관련 수 · 발신 공문
 - 나. 제안서, 탐색개발실행계획서,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체계요구사항명세서

법제처 61 국가법령정보센터

- 다. 연구개발과정 상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내역서(Change Record, 연구노트 등)
- 라. 연구개발과정 상 생성된 업무성과 및 기술 등(논문, 특허 등)
- 마. 시험평가계획서 및 시험평가 결과서
- 3. 기타 성실수행평가에 필요한 자료
- 제118조의16(성실수행평가위원회) ① 기품원장은 제118조의15에 따라 제출한 평가계획에 따라 성실수행평가위원 회를 구성하여 성실수행여부를 평가 한다.
 - ② 성실수행평가위원회는 호선으로 선정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20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선정 방법 등은 별표 제9호의 기준을 따른다. 이 때, 내용이 비밀인 사업인 경우 평가위원은 비밀취급 인가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성실수행평가는 선정된 평가위원의 2/3이상 참석 시 실시한다.
 - ③ 성실수행평가를 위해 평가위원들에게 평가관련 안내자료를 평가위원회 3일 전까지 개별 통보하며, 평가자료는 평가 당일 배포한다.
 - ④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품원 예산에 반영・지급하도록 한다.
 - ⑤ 성실수행평가위원의 구성 및 운영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3조에 따른다.

제118조의17(성실수행평가 절차) ① 성실수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 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위원회에 배석하여 대상사업의 추진경과 등에 대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설명한다.
- 2. 평가는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의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 및 응답, 토론, 평가의견서 작성 순으로 실시한다.
- 3. 평가위원(위원장 포함)은 성실수행 평가기준(별표 제10호)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판정사유(평가의견)를 평가 의견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개별 평가의견을 종합하여 평가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4. 종합점수는 각 항목별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종합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한다.
- 5. 연구개발 주관기관 발표 시 주관기관의 연구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종합토론 및 평가의견서 작성은 비공 개로 실시하고, 이때 평가위원 외에는 모두 퇴장하여야 한다.
- ② 평가기준 항목별 배점은 다음 표와 같고,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속하는 사업본부장은 항목별 배점 기준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목표 미달성 사유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외부요인 영향성
30점	50점	20점

- ③ 기품원장은 평가위원별 평가의견서 및 평가종합의견서를 종합하여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안에 유의하여 계약부서장에게 제출하며, 계약부서장은 이를 협약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협약심의위원회에서는 성실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의 성실수행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인정되는 경우청장은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평가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법제처 62 국가법령정보센터

성실수행 평가 결과	참여제한 기간 감면	사업비 환수액 감면
70점 이상~80점 미만	12개월 이내 감면 가능	사업비 환수 금액의 최대 50% 감면 가능
80점 이상~90점 미만	18개월 이내 감면 가능	사업비 환수 금액의 최대 75% 감면 가능
90점 이상~100점 이하	24개월 이내 감면 가능	사업비 환수 금액의 최대 100% 감면 가능

제4장 구매사업 제1절 일반사항

- 제119조(추진 원칙 및 구분) ① 법 제19조에 따라 무기체계 구매사업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생산품이 없는 경우 등 국내구매가 곤란할 때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 ② 무기체계 구매사업은 구매형태에 따라 국내구매, 국외구매, 임차로 구분한다. 이 때 구매사업은 구매 무기체계에 대한 야전운용시험을 위하여 최초구매사업과 후속구매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③ 국외구매시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업체의 참여정도를 제안서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제3항의 국외구매시 국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내업체가 국외업체와 해당 무기체계 제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부품을 제작·수출 하는 계약을 맺는 방식
 - 2. 국내업체가 외국 원제작사와 해당 무기체계의 생산권한을 양도·대여 받는 계약을 맺고 국내·외에서 면허생 산하는 방식
 - 3. 기타 국외업체가 국내업체의 생산 정비 등 참여방안을 제안하는 방식
 - ⑤ 국외구매 시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절충교역 지침」을 따른다.
 - ⑥ 그 밖에 구매사업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 제120조(구매계획서 작성 및 수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 관련 부서 및 기관의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구매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 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국지도발 긴급전력 등은 청장 또는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할 수 있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FMS 및 대정부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구매국간 연도별 확보계획을 고려하여 경제적 획득이 가능하도록 적정 구매시기를 판단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세미나, 업체 방문, 해외 주재원 활용 등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④ 구매계획서 보완 및 수정과 관련하여서는 제75조의 관련절차를 준용한다.
- 제121조(구매요구서 (안) 사전공개)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요구성능에 대한 사전검증 및 입찰업체간 경쟁 활성 화를 위해 구매계획에 반영하여 입찰공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구매요구서(안)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입찰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하여야 한다.

- 1. 제안요구성능(비밀내용 제외)
- 2. 납품장비 목록 및 구매요구서(안)
- 3. 구매시험평가 계획 및 평가항목(성능입증자료 평가 관련사항 포함)
- 4. 업체선정 방법, 사업추진 일정 및 기타 유의사항 등
- 제122조(사업관리)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 1. 생산현장에 파견할 사업관리관 인원선발, 파견 및 통제 업무
 - 2.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관리회의 주관
 - 3. 총사업비 관리 및 중기계획 조정 등
 - 4. 예산편성, 예산 증감 재배정 및 결산 업무
 - 5. 물품 납품일정 확인 등 적기납품 및 전력화를 위한 조치
 - 6. 납품, 인수를 위한 수락검사 업무 관리
 - 7. 납품완료 후 전력화를 위한 후속조치업무[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 업무 포함]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서에 따라 사업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다.
 - 1.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약업체와 협의 및 후속조치 업무수행
 - 2. 계약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는 계약부서장과 사전 협조 후 수정계약 요청
 - 3. 사업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소요군 주도 국내수락시험 수행 이전에 공장수락시험 결과를 소요군 및 기품원에 통보
 - 나. 해당 장비특성을 고려하여, 업체주도 현장 공장수락시험 시 사업담당자 외 무기체계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요구성능 충족 여부 확인
 - ③ 국방규격 제정은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부서로부터 소요군의 하자보고 내용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계약부서장과 협의하여 사업관리상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 ⑤ 국외구매사업의 경우 계약수행평가를 수행하되, 평가는 계약체결 후와 계약종료 후 실시한다. 그 밖에 계약수행평가에 관한 세부절차는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른다.
- 제123조(납품 및 물품 인수를 위한 확인)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물품 인도 시에 소요군의 수락시험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수량 및 성능이 충족하는지를 소요군이 확인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책임 등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소요군의 수량 및 성능의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이확인 시 참여할 수 있다.
 - 1. 맨눈으로 장비 또는 물품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방법
 - 2. 보조ㆍ지원장비 및 일반물품에 대하여 기능상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방법

법제처 64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차량 및 전차, 함정, 항공기, 레이다, 유도무기 등 별도의 성능확인이 필요한 완성장비 형태의 주장비에 대해 장비를 실제로 작동(유도무기의 경우 사격시험 포함)하여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
- ③ 제2항제3호의 방법은 제작사가 장비를 생산 완료 후 구매자에게 인도를 위해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제작업체 책임으로 수행하는 공장수락시험과 제품이 계약서상의 인도 조건에 따라 인도 장소에 도착한 후 소요군 주관으로 성능 이상 유무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국내수락시험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유도무기의 경우 수락시험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함정 건조 성능 확인을 위한 수락시험은 제93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시운전 형태로 수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의한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한 수락 또는 수락불가로 한다. 다만, 계약조건 이외의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수락여부와는 별도로 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여 보완조치 할 수 있다.
-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서 및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수락을 위한 시험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계약업체 및 소요군과 협조하되, 시험결과 판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수락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이에 필요한 절차와 시기,계약내용 등 수락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소요군 및 업체에게 통보한다.
- ⑥ 계약 목적물의 최종 이전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소요군의 검수관이 물품수령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서 업체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국내구매사업

제124조(추진대상)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국내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 1. 업체가 자체적으로 무기체계를 연구개발 또는 개조한 경우. 다만,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성능입증 결과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170조에 따라 자체 개발한 국내 판매용무기체계에 대한 성능시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2. 연구개발 필요없이 장비(상용 또는 군용) 또는 상용기술로 응용 또는 개량하여 생산이 가능한 경우
- 제125조(구매절차)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부서장과 계약방법을 협의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입찰공고, 시험평가 및 적격심사 등에 의한 계약대상자 선정, 구매계약 체결 등의 절차로 추진하되, 사업특성에 맞게 계약방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내구매사업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시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추진하며, 세부절차는 이 규정 및「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 1. 구매계획 수립
 - 2. 제안요청서 작성
 - 3. 입찰공고
 - 4. 제안요청서 교부
 - 5.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6. 시험평가 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선정

- 7. 시험평가 및 협상
- 8. 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기종결정
- 9. 구매계약 체결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업체 중에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업체가 시험평가의 지원요청을 하여 성능을 입증받은 경우에는 기품원장이 발부한 성능시험지원 결과를 시험평가 시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를 통한 성능입증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각 계약부서장에게 구매 대상장비의 성능과 사양, 요구조건, 입찰참가자격, 수락시험 조건 등을 통보하여「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라 추진되도록 한다.
-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이 필요한 국내구매사업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추진시에는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는 생략하고, 제5호 중 제안서평가는 무기체계의 특성, 사업규모,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이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의 제35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에서 제안서평가를 실시할 경우, 구매계획서에 다음 각 호 중 적절한 제안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반영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평가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제안서 평가는 수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평가팀이 평가하는 방법
- 2. 사업부 자체 제안서평가팀이 평가하는 방법
- 3. 사업팀이 자체 평가하는 방법
- 4. 기타 적절한 평가방법
-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6항의 제안서평가 결과가「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34조의 '필수조건' 중 작전요구성능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미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상 및 시험평가를 추진할 수있다. 다만, 협상 및 시험평가 이후에도 '필수조건' 항목이 미충족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기종결정을 위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⑧ 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구성품 중 상용품은 단종, 성능개선 등 사유로 인한 변경 필요성과 공인기관의 인증 등을 통해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입증된 후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본부 공동내규」에 따른 상용제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제7호에 따른 시험평가 종료 전 변경할 수 있다.

제3절 국외구매사업

제126조(구매절차)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구매사업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시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추진하며, 세부절차는 이 규정 및「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 1. 구매계획 수립
- 2. 제안요청서 작성
- 3. 입찰공고
- 4. 제안요청서 교부
- 5.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6. 시험평가 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선정
- 7. 시험평가 및 협상
- 8. 가계약 체결
- 9. 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기종결정
- 10. 구매계약 체결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 작성 시 국외업체의 제안서에 전력화 이후 후속군수지원 방안 및 국산 부품 사용계획이나 적용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안서평가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산 부품이란 최종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2항의 부품국산화율 산정공식에 따른 국산화율이 100분의 51 이상인 부품을 말한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시험평가 및 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방위력개선사업 중기계획요구서 및 연도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이 필요한 국외구매사업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추진시에는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는 생략하고, 제5호 중 제안서평가는 무기체계의 특성, 사업규모,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이 절차에 따라 계약을체결하는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35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구매사업을「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추진시에는 제 125조 제6항과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⑥ 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 구성품 중 상용품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125조제8항에 따른다.
- 제127조(군수품무역대리업체 관리)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5백만 미합중국 달러 이상의 전력운영사업과 2천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을 국외 상업구매로 추진 시 국외업체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국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을 요청하면 시험평가 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로 선정된 이후에 계약부서장이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제100조를 준용하여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국외업체의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을 수락할 수 있다.
 - 1.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
 - 2. 군수품무역대리계약서

- 3.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규칙 별지 제2호서식)
- ②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국외업체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여부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사업 예산이 2백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인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임을 명시하여야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상대자나 해당 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사업 예산이 2백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인 국외조달 입찰 시 국외업체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로부터 규칙 제57조의3의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서와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를 말한다) 제출 마감일까지,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경과 후에 중개수수료에 관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개수수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받아야 한다.
- ⑤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청과 국외업체의 계약체결로 인해 중개수수료가 변경되는 경우 등과 같이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규칙 제57조의3의 변경신고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품무역대리업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 ⑥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와 변경신고서를 방위 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출받은 중개수수료 신고 내용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 력하여 관리한다. 이때,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계약체결일 이전에 제출받은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는 입찰공고번호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이후에 제출받은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는 계약번호를 명기하도록 한다.
- 제128조(대외군사판매 구매 추진)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FMS구매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미 정부와 사전 협의 등을 통하여 가격 및 가용성자료 등 구매대상 무기체계 관련 정보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다수의 공급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126조 구매사업 절차를 준용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FMS 절차에 따른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을 토대로 오퍼요청서(별지 제18호서식) 1부를 작성하여 기종결정을 위한 위원회심의 전에 오퍼가 도착할 수 있도록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에게 오퍼 획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력화 일정, 예산의 효율적 활용, 오퍼내용의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 정부에서 확정한 오퍼 초안을 획득한 후 기종결정을 위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과 협의 후 청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오퍼 초안과 최종 오퍼의 내용이 다를 경우 다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합암호장비 구매 추진 시 오퍼요청서 제출 이전에 미정부로부터 인가절차(RIP/RIS)가 완료되도록 소요군과 협조하여야 하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위원회를 통해 획득 대상장비를 정할 수 있는

법제처 68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우 획득된 오퍼를 수락할 수 있다.

- 제128조의2(국내업체 참여 강화 지원)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국외구매 추진 간 국내업체 참여 증대를 위해 국내업체 정보를 탑재한 정보 사이트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협회 등의 설립)에 의거 설립된 협회로 하여금 구축하게 할 수 있다.
- 제128조의3 (대외군사판매 외 대정부계약 추진)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미국 외 타국 정부 및 타국 정부간 협의체를 통해서 군수품을 획득한 경우, 해당 정부 또는 정부간 협의체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제공가능 여부 및 가격 등 구매대상 무기체계 관련 정보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다수의 공급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126조 구매사업 절차를 준용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8조의4(사업중간점검)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인 대형 국외 구매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소요, 사업비용, 일정 등에 대한 사업관리 위험요소를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1. 시험평가 및 협상 착수 3개월 이후
 - 2. 구매계약체결 1년 이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폭탄 등 국외에서 단순 완제품을 구매하는 사업 또는 총사업비 3,000억원 미만인 국외구매사업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장이 사업의 중요도, 기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중간점검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점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작전운용성능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 수정 필요성
 - 2. 비용 증감 등에 따른 사업범위 조정 필요성
 - 3. 사업기간 및 전력화시기 조정 필요성
 - 4. 부품단종, E/L, 기타 암호 및 보안장비 등 위험요소에 대한 영향 및 대책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조설계 또는 체계통합이 필요한 경우 등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중간점검 시기, 횟수 및 점검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기타 후속조치 등 사업중간점검 관련 이 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65조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4절 임차사업

- 제129조(추진대상)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체계를 임차하여 획득할수 있으며, 구매사업절차를 준용하여 추진할 수 있다.
 - 1. 운영유지비를 포함한 획득비용이 구매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일 경우
 - 2. 구매에 의해서는 전력화 요구시기를 충족하기가 곤란한 경우
 - 3. 기술발전 또는 지속적인 장비의 성능개량 등으로 무기체계를 임차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 4. 해당 무기체계 필요 운용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로서 구매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 5. 그 밖에 가용재원 후속 군수지원 등을 고려할 때 임차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 **제130조(기종결정 평가요소)**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에서 제출한 대상장비 시험평가결과와 계약부서장의 임차 가계약서를 근거로 기종결정 평가요소를 비교 평가한다.
 - ② 임차 무기체계에 대한 기종결정 평가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차비 및 운영유지비에 대한 경제성
 - 2. 계약조건에 대한 평가요소는 다음 각 목에 따름
 - 가. 도입가격
 - 나. 인도시기 및 임차조건
 - 다. 대금지급조건
 - 라. 지체상금 및 하자에 관한 조건
 - 마. 기타 임차요구조건의 충족성
 - 3. 전력화지원요소
 - 4. 방산・군수협력협정 체결여부
 - 5. 대 외국 판매 임차실적 및 주요국가의 운용실적
 - 6. 기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평가요소 평가 시 소요군, 국과연·기품원·국기연·국방연·신속원 등 관련기관에 평가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제5장 신속소요사업

제1절 일반사항

- 제131조(추진원칙 및 구분)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는 예산편성 후 5년 이내에 전력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이 신속소요에 대한 추가 소요를 반영하면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및 후속양산계획을 수립하고 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신속소요사업은「혁신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구매로 추진할 수 있다.
- 제132조(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39조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되, 신속소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항목을 조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행연구 결과'는 '사전개념연구 결과'로 대체하며,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생략할 수 없다.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신속연구개발기본계획 또는 구매계획을 사업추진기본전략과 동시에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타당성조사를 추진하는 등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제2절 연구개발사업

- 제133조(연구개발 절차)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혁신법 시행령」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체계개발과 양산을 통합하여 추진한다. 이 경우 사전개념연구에서 수행한 제조가능성 분석으로 제조성숙도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계약시작부터 24개월 이내에 시제품을 개발하고, 시험평가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양산을 지체없이 착수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③「혁신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시제품을 전력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요군이 시제품 전력화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전력화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하면,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 소요군, 기품원, 연구개발주관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기품원은 제3항에 따라 전력화하는 시제품을 포함하여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시험평가 미충족 항목이 있는 경우에 법 제16조에 따른 소요수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의 절차는 제3장의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를 준용한다.
- 제134조(신속연구개발기본계획서 작성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속연구개발기 본계획서(별지 제26호)를 작성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 1. 업체 통합(체계개발, 양산) 선정기준・방법
 - 2. 시제품 개발기간(24개월) 및 신속소요의 전력화시기(예산편성일로부터 5년)
 - 3.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통합수행여부
 - 4. 시제품을 포함한 품질보증계획
 - 5. 시험평가를 통해 식별된 개선사항을 시제품 및 양산물량에 반영・환류하기 위한 계획
 - ② 신속연구개발기본계획서 수정과 관련하여서는 제75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추진기본전략, 신속연구개발기본계획서를 근거로 제76조를 준용하여 신속연구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신속연구개발기본계획서 및 신속연구개발실행계획서에 따라 신속소요사업(체계개발, 양산)을 추진한다.

제3절 구매사업

- 제135조(구매 절차)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 무기체계에 대한 품질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품원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그 밖의 절차는 제4장의 구매사업 절차를 준용한다.

제6장 긴급소요사업

제1절 일반사항

- 제136조(적용범위) 본 장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긴급소요로 결정하거나 긴급소요로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137조(추진원칙) 긴급소요의 경우에는 구매로 추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로 추진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 시제품을 전력화하는 사업의 경우
 - 2. 체계개발로 종결되는 사업의 경우
 - 3. 탐색・체계개발을 생략하고 양산하는 경우
- **제138조(긴급소요결정에 관한 의견제시)**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긴급소요의 경우 제14조제1항각호에 따른 검토의견 외에 다음 각호의 검토의견을 제시 및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1. 방위사업정책국 :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긴급소요 원칙과의 부합성
 - 2. 사업본부 : 구매로 추진하기 위한 군 요구성능 조정 필요성, 구매불가 시 제136조제1항각호의 연구개발 추진 요건과의 부합성
 - 3. 전문연구기관(국기연) : 군 요구성능 및 국내・외 무기체계 분석을 통한 구매가능성
- 제139조(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체계개발기본계획(제137조제3호의 경우 양산계획) 또는 구매계획과 동시에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시·사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결정된 긴급소요의 구매계획서는 청장 또는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할 수 있다.

제2절 구매사업

- **제140조(비용분석 수행)**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긴급소요사업을 구매로 추진하는 경우 적정 사업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비용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1조(수의계약)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로 추진하는 긴급소요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영 제61조제3항제5호의 긴급소요의 경우 총사업비 내에서 제안한 군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무기체계 중 가장 조기에 전력화가 가능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절 연구개발사업

제142조(선행연구 수행)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국내·외에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무기체계가 없어 연구개발로 추진이 필요한 긴급소요의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3조(품질보증) 기품원은 제137조제1호에 따라 시제품을 전력화하는 경우에는 전력화하는 시제품을 포함하여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제144조 ~ 제154조 <삭 제>

제7장 전시방위사업관리

제155조(기본지침) ① 방위력개선사업의 전시 전환 시기는 동원령 선포시기이다.

- ② 기획조정관은 방위력개선 분야의 전시 사업 재분류 및 전시예산 획득 업무를 주관한다. 사업 재분류 및 전시예산(안) 재편성 결과는 전시 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
- ③ 전시조달은 「전시예산회계에관한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대통령긴급명령"이라 한다) 선포와 동시에 전시 예산체제 전환에 따른 전시조달계획에 의하여 운영한다. 사업본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전시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쟁가정 전년도 10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통보한다.
- ④ 국내 조달원 지정업체가 전시조달을 위한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이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술보유기관은 해당 내용을 국방기술보호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전시 절차는 전 평시 관련규정 및 지침 등을 준용한다.
- 제156조(신규전력 획득절차)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전쟁위협이 임박하다고 판단되거나 동원령이 발령된 경우에 전시 신규 전력소요서를 합참으로부터 접수하면 전시 방위사업관리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자체적으로 반영할 전력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절차에 따라 반영한다.
 - ② 전시 신규무기체계는 외국에서 전력화되어 운영중인 무기체계로서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장비와 국내 업체에서 연구개발하여 작전운용성능이 입증된 장비를 대상장비로 선정하여 구매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사업관리팀은 구매 협상계획을 작성하여 계약부서,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이 통보한 대상장비 시험평가결과와 구매 가계약서 검토결과를 근거로 기종 결정(안)을 작성하고 국방부(전력정책관)로 보고하여 전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기종을 결정한다. 다만, 전쟁수행에 긴급한 전력이나 긴급한 사업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시 위원회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57조(전시 품질보증) ① 품질보증기관(기품원)은 평시와 동일하게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시 대군기술지원 및 사후봉사활동을 위해 대군지원 인력을 운영 · 유지하며, 전방지역의 신속지원을 위해 근접대군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품질보증기관(기품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 중앙조달물자에 대한 소요의 긴급정도를 고려하여 초긴급 (제반 품보활동을 생략해야 납기 내 납품 가능), 긴급(일부 품보활동을 생략해야 납기 내 납품 가능), 정상(평시 절차 적용)에 따라 품질보증활동 범위를 조정하여 수행하며, 전시 품질보증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방산물자의 경우 소요의 긴급정도에 따라 품질보증활동 범위를 사전에 지정하는 전시 방산물자 품질보증계획서를 매년 전시조달계획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작성한다. 소요의 긴급정도는 전시조달계획서에 명시한다.

법제처 73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58조(전시예산 편성 절차 및 운영) ① 기획조정관은 국방부의 전시예산편성지침을 사업주관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각군 및 합참은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을 기초로 전시예산요구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국방부검토를 받아 7월말까지 사업본부장 및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 ② 전시예산요구서는 전시대비 방위력개선사업의 분류결과와 전시 대비 평시 소요확정전력 및 전시 편제장비 부족소요에 대한 예산요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전시예산 소요판단시는 전시 물가인상 및 위험부담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 ③ 사업본부장은 각군 및 합참에서 제출한 전시예산 요구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가능성, 획득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반영한 전시예산요구서를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이 때 사업본부장은 국방부(전력정책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전시예산요구서에 반영하기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조기추진으로 분류된 방위력개선사업의 조기추진계획
 - 2. 전시대비 평시 소요확정 전력의 전시예산요구서
 - 3. 전시 편제장비 부족 장비의 전시예산요구서
 - ④ 전시예산편성은 전투·전투지원 소요를 우선 반영하고 전투 소요물자, 긴급피해복구예산, 기타 필요 예산순으로 편성한다.
 - ⑤ 기획조정관은 국방전시예산편성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주관부서 및 기관에서 작성한 전시예산요구서를 검토·조정·종합하여 방위력개선분야의 전시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전력정책관실에 9월말까지 보고하고국방부(전력정책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전쟁가정 전년도 11월 15일까지 국방부(계획예산관)에 제출한다.
 - ⑥ 평시 예산운영은 대통령긴급명령 선포와 동시에 전시 예산체제로 전환되어 운영한다. 대통령긴급명령 선포 이전에 발생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채권, 채무는 전시 국방비 특별회계에 포괄 승계된다.

제159조(전시예산 소요) ① 전시예산 소요는 긴급조치예산과 추가소요예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긴급조치예산은 M일부터 M+30일까지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말한다.
- 1. 동원령 선포일 현재 완료된 사업의 잔금
- 2. 집행중지사업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 3. 정상추진사업의 기간 중 지급소요
- 4. 조기추진사업의 현 계약상 기간 중 지급소요(판매자와 조기추진이 즉각 합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기간 중 추가소요를 포함한다)
- 5. 기확정 미계약사업 중 전시에 추진할 사업의 착수금 및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 ③ 사업본부장은 단계별 조치사항에 명시된 시기에 대금지출 현황 및 긴급조치예산소요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한다.
- ④ 추가소요예산은 M+31일 이후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말하며, M+31일부터 M+364일까지소요와 M+365일부터 사업종결시까지의 예산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 1. 정상집행사업의 계약상 M+31일 이후 소요예산

법제처 74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조기추진사업의 조기추진계획상 M+31일 이후 소요예산
- 3. 기승인 미계약사업 중 전시추진사업의 긴급소요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
- 4. 미승인사업 중 전시에 추진할 사업의 소요예산
- ⑤ 사업본부는 단계별 조치사항에 규정한 시기에 31일 이후의 예산소요를 추가소요예산으로 작성하여 해당 각 군·기관에 통보하고, 각군 및 기관은 자체에서 직접 집행할 부분을 통합한 31일 이후의 예산소요를 추가소요예산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하고, 사업본부장은 이를 종합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한다.
- 제160조(전시예산 배정 및 결과보고) ① 긴급조치예산은 별도의 예산배정 요구없이 긴급조치 예산소요 보고에 의거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한 상황변동으로 긴급조치 예산소요 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총괄예산을 배정하고 추후 사업별로 배정액을 정리한다.
 - ② 31일 이후의 예산배정을 위하여 사업본부는 3개월분의 예산배정요구서를 대상기간 전월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 ③ 사업본부장은 각 집행기관에서의 집행분을 통합한 예산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대상기간 전월 20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한다.
 - ④ 기획조정관은 대상기간 전월말까지 예산을 배정한다. 사업본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기배정예산에 추가하여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시예산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예산추진결과보고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예산배정 요구서로 갈음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종결 시 종결사업 예산집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며, 그 절차는 예산배정 요구시와 같다.
 - ⑥ 진행중인 사업의 기간별 잔액은 차기 지급소요에 충당하고, 1개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별 잔액은 동일사업의 타 세부사업에 전용하여 충당하되, 차기 예산배정소요시 동 잔액을 감액한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종결사업의 잔액은 회수하고 감액배정으로 정리한다.
- 제161조(사업분류) ① 기획조정관은 전시 사업관리의 신속한 전환을 위하여 평시부터 국방부, 합참, 각군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F+1년 평시예산 및 F+1년부터 F+5년까지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F+1년도 전쟁수행의 긴요도와 사업성격에 따라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전시사업관리구분에 따라 업체, 사업주관부서 및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② 신규 미확정대상사업은 사업주관부서의 검토 후 필요 시 전시 위원회의 사업 심의 조정결과에 따라 사업을 집행한다.
 - ③ 사업본부장은 조기전력화 추진을 위해 전시 신규소요 및 평시 사업분류된 장비 및 물자에 대한 구매방안, 확보전망, 조기확보 가능여부 등을 동원령 선포 시 및 소요 결정전 합참 및 소요군에게 통보한다. 또한 사업본부장은 전시 소요장비 및 물자를 최단기간내 획득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구매(임차)로 추진하며, 그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조기전력화를 추진한다.
 - ④ 사업본부장은 필요 시 전시 신규무기체계에 대한 분석평가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분석평가 결과를 사업본부장, 합참 및 각군으로 통보한다.

법제처 7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2조(사업분류 절차 및 표기방법) ① 전시 전력투자사업의 신속한 분류와 사업관리체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하여 평시 아래와 같이 사업을 분류한다.

1. 세부사업별로 분류하여 아래부호를 연도별로 구분 기록한다.

세부사업	부 호					
	F	F+1	F+2	F+3	11.1	
주장비	8	정	정	조		
수리무속	8	정	정	조		
부대공사	8	중	중	조		

※ 조: 조기추진, 정: 정상집행, 중: 집행중지

2. 세부사업별로 분류한 후에 해당 사업 전체에 대한 전시관리 구분을 사업번호 말미에 아래 번호를 ()내에 기록한다.

구 분		부 호	표기방법 (예)
당해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의 분류가 동일한 사업		해당분류	1111(조), 2222(정) 3333(중)
당해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의 분류가 상이한 (상이하게 분류되는 세부사업이 혼합된 사업)	사업	"套"	4444(혼)

- ② 전시가 되면 사업본부장은 사업성격과 당시 사업진도 및 기타상황을 고려하여 평시에 분류한 사업분류(미 계약·협약 사업을 포함한다)의 적절성을 재검토하여 단계별 조치사항에 규정한 시기에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전시 사업분류가 평시 사업분류와 동일한 사업은 제외한다.
- ③ 기획조정관은 예비 분류된 전시 사업분류를 충무3종 시 실상황에 맞게 재분류 후 청장 결재로 확정하여 사업본부에 통보한다.
- ④ 미집행사업 중 전시 조기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각군·기관에서 선정 및 분류하여 단계별 조치사항에 규정한 시기에 미집행사항 중 조기집행 요망사업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조정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후 사업본부장에게 통보한다.

제163조(기계약 조기추진사업) ① 조기추진사업이라 함은 사업추진 진도를 고려할 때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조속히 전력화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주요 전투장비 및 탄약
- 2. 주요 전투지원장비 및 물자
- 3. 주요 전투근무지원장비 및 물자
- 4. 일반장비 및 물자 중 전시소모율이 높고 민간동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장비 및 물자
- 5. 지휘통신시설, 활주로, 전탐기지, 방공포기지 등 전투긴요시설로서 단기간 공사가 가능한 시설사업
- 6. 체계개발사업 중 종결단계에 있는 사업으로서 단기전 상황에서 실용화할 수 있는 사업
- 7. 함정사업의 경우 진수 시점 단계에서 조속한 실전 운영이 요구되는 후속함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각군·기관이 요청한 조기추진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장이 통보한 계약상대자의 이행여 부 확인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추진 여부를 확정하여 통보하되, 조기추진으로 인한 추가예산소요는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 제164조(기 계약·협약 정상집행사업) ① 정상집행사업이라 함은 사업추진 진도를 고려할 때 사업추진 완료단계로 조기에 실전 운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며, 추진계획 및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 1. 체계개발: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한 운용시험평가 완료단계에 있는 사업. 다만, 시험평가결과 전항목 재시험 이 필요한 사업은 제외.
 - 2. 구매: 시험평가 완료단계에 있는 사업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가격인상, 대금·출연금 지급계획 변경, 납품시기 연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계약부서장에게 통보한다.
- 제165조(기 계약 · 협약 집행중지사업) ① 집행중지사업이라 함은 사업추진 진도를 고려하여 전시에 추진을 중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민간동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장비 및 물자
 - 2. 우방국의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장비 및 물자
 - 3. 현 전쟁에는 긴요하지 않으나 전후 군사력 재건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
 - 4. 전쟁수행에 긴요하지 않는 시설사업
 - 5. 전쟁수행에 긴요한 시설이나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전쟁수행에 기여하지 못하는 시설사업
 - 6. 전쟁수행에 긴요한 시설로서 단기공사가 가능하나 전투지역에 근접하여 공사가 불가능하거나 적의 주요 타격목표가 되어 파괴 시 복구에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사업
 - 7. 주요 장비개량사업 중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사업
 - 8. 양산단계에 들어가지 아니한 장비 및 물자의 생산사업
 - 9. 조기추진사업 및 정상집행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 중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사업
 - 10. 함정사업의 경우 진수 시점 단계에서 조기 실전 운영이 제한되는 후속함
 - 11. 그 밖에 현행 전투에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사업
 -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획조정관이 사업분류 확정 하달 시 사업추진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장은 해당 업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전투시설이 아닌 병영시설 등의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태변경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전에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공사로 인한 퇴적물 및 형질의 변경 등이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교통소통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중지한다. 시설사업의 집행중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잉여 자재는 피해복구 및 기타 용도에 활용가능하나 추후 정산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66조(미계약·협약 사업 분류) ① 미계약·협약 사업 분류는 업체선정 또는 기종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가 있고 계약 또는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업과 기집행된 사업의 일부 또는 후속사업으로서 계약 또는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분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집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의 예산잔액은 다른 부족사업에 투입한다.
- 1. 모든 신규시설사업
- 2. 새로운 장비 및 물자의 신규 국내생산사업. 다만, 소규모 시설투자로 단기간내에 양산하여 즉각 실용화할 수 있는 장비와 물자는 제외
- 3. 조기도입이 불가능한 장비 및 물자
- 4. 국외구매로서 조기에 도입하여도 상당기간 교육하거나 운영경험이 없이는 실전운영이 불가능한 장비
- 5. 기타 전쟁수행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사업
-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정상집행이 필요한 미계약·협약 사업에 대해 기획조정관의 사업분류 확정 후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다.
- 1. 정상집행 사업은 계획대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다.
- 2. 조기추진사업은 조기에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되, 판매자가 조기추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요제기기 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을 중지하거나 정상집행사업으로 진행한다.
- ④ 계약부서장은 계약 또는 협약 체결 시 가격, 납기, 대금 또는 출연금 지급계획, 기타 계약 또는 협약 조건이 기계획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의하여 사전 확인한 후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다.
- 제167조(기타사업 분류) ① 기 계약 또는 협약 사업 및 사업추진이 필요한 미 계약 또는 협약사업을 제외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사업추진이 미확정된 사업 또는 예산은 미편성되었으나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중에서 전시 긴요 도에 따라 필요한 사업은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하여 조기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국외구매 절충교역은 제외할 수 있다.
 - ② 전투 긴요장비 및 전투지원장비로서 전시 전력증강을 위하여 추가집행이 요망되는 사업은 전시에도 집행한다. 다만, 우방국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거나 전시조달계획에 포함된 장비는 제외한다.
 - ③ 조기추진 및 정상집행사업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집행한다. 다만, 긴급한 소요는 일부 절차를 생략하여 집행할 수 있다.
 - 1. 협상의뢰 및 협상(가계약을 포함한다)
 - 2. 사업집행요구
 - 3. 기획조정관 검토 및 필요 시 관련기관 협조
 - 4. 위원회 확정
 - 5. 계약 또는 협약 등
 - ④ 사업집행요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하여 평시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 1. 사업개요
 - 2. 제원 및 성능(기보유장비는 제외한다)
 - 3. 필요성(소요산출내역을 포함한다)
 - 4. 운영개념 및 배치계획
 - 5. 금회 건의사업 내용

- 6. 대금 또는 출연금 지급계획
- 7. 사업추진계획
- 8. 건의
-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 기관 및 부서(기획조정관, 방위사업정책국, 계약부서 등)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집행요구서를 보완한 후 위원회에 상정한다.
- ⑥ 미집행사업 중 전시집행 대상사업은 전시예산서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되 시기, 목표량, 예산, 전력화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1절 국방과학기술관리

- 제168조(국방과학기술의 정의 및 대상) 국방과학기술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제조· 가동·개량·개조·시험·측정 등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부가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한 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기술
 - 2. 정부가 재실시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는 기술협력생산 또는 절충교역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
 - 3. 정부가 외국정부 및 외국업체 등 외국자본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또는 국내업체와의 공동투자를 통해 확보된 기술
 - 4. 민간에서 투자하여 개발된 기술로서 정부가 군수품 획득을 통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 제169조(국방과학기술의 소유권 등) ① 청, 각군,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국기연 등 기술보유기관은 국방과학기술을 확보·사용·관리 등을 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 및 실시권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가에 있음을 연구개발협약 또는 계약의 내용에 명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소유에 관하여는 「혁신법」제10조 및「국방과학연구소법」제18조에 의한다.
 - ③ 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절충교역에 의하여 획득된 교범, 기술자료, 장비 및 공구 등에 관한 모든 권리는 국가에 귀속된다. 방위산업진흥국, 사업본부, 기품원, 국과연, 신속원, 국기연 등 절충교역 관련부서는 절충교역 자산을 방위력개선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70조(기술 확보 및 확인)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기술기획서의 무기체계 분야별 기술확보방안을 근거로 기술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기술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기술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
 - ② 국기연은 기술보유기관이 확보한 기술을 업체가 활용하는지 여부를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79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국기연은 기술보유기관이 확보한 기술목록과 확보기술의 활용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71조(국방과학기술관리) ① 기술보유기관은 정부예산 또는 절충교역에 의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외업체에서 6월 이상의 기술교육을 받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현황을 매년말까지 DTiMS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방산업체 등은 소유권이 있는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에 임치업체의 부담으로 임치할 수 있다.
 - ③ 국방과학기술의 등록 및 관리는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 제172조(기술개발성과 활용) ① 기술보유기관은 이전 가능한 기술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기연 등 관련기관의 검토 후 이전 가능한 기술을 선정하여 기술보유기 관 및 국기연으로 통보한다. 이 경우 기술보유기관은 민수활용 가능성, 공개 시 보안성 유해여부, 이전 시 관련 사업에 미치는 영향, 이전시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이전 가능한 기술목록을 분류하여야 한다.
 - ② 국기연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이전 가능한 기술목록 및 기술보유기관, 특허등록 여부 등을 인터넷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기술보유기관은 기술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개발결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73조(기술수준조사·기술예측조사 및 국방과학기술조사서 작성) ① 국기연은「혁신법 시행령」제15조제1항제 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 및 기술발전추세 분석(이하 기술수준조사)과 제18조제3호에 따른 국방과학 기술 예측조사 및 분석(이하 기술예측조사)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기연은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예측조사를 착수하기 전 국방과학기술 지식·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각 군 등과 협의하여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선정할 수 있으며,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예측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조사절차 및 방법
 - 2. 조사항목 및 분석 결과
 - 3. 조사추진체계 및 참여인력
 - ③ 국기연은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예측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외 국방과학기술수준, 주요 국가의 무기체계 발전 추세 및 능력, 국내 방산업체 및 산학연의 연구개발능력, 예측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국방과학기술조사서를 3년 주기로 작성하여 방위사업청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기술수준조사서, 기술예측조사서 등 의 간행본으로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 ④ 국기연은 기술수준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방부, 합참, 청, 각군, 국과연, 신속원, 방산업체,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요청할 수 있다.

- ⑤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예측조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국기연 내부 규정에 따른다.
- 제174조(기술이전) ① 국방기술보호국장 및 국제협력관은 정부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하여 획득한 국방과학기술을 국내의 관련 업체 및 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이하 "기술이전"이라 한다)하거나,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한 제반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수출대상 목록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기연은 DTiMS에 이전대상기술 목록을 입력하고 관리하며,국방기술조사를 통해 조사된 기술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국방기술통제목록을 3년 주기로 작성하고, 필요 시 수시로 보완하며, 관계기관은 기술이전, 수출 등 검토 시 이를 참고한다.
- 제175조(기술이전 신청 및 승인) ① 「혁신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기술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 1. 기술이전의 목적
 - 2. 이전을 받고자 하는 기술내용
 - 3. 이전 받고자하는 기술에 대한 활용 계획서
 - 4. 기술료 감면 사유
 - ②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심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 후 청장에게 이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유기관이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에서부터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기술이전의 범위 및 내용
 - 2. 기술이전 대상자의 적격 여부(기술이전을 통한 사업수행 계획의 타당성 등 고려)
 - 3. 기술이전의 필요성
 - 4. 기술료 산정 기준, 징수액 및 징수방법
 - 5. 기술료 감면 사유
 - 6. 기술이전의 절차 및 문제점
 - 7. 기술이전 시 기술이전을 받은 기관 등이 준수해야할 제한사항
 - 8. 기타 기술이전 시 필요한 사항
 - ③ 청장은 이전 신청을 받은 기술이「혁신법 시행령」제16조제5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이전을 할 것을 해당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발성과물이 국가가 사업비를 전부 출연한 사업에서 산출된 것인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제2항에 의하여 이전승인 요청을 받은 청장은 국과연, 국기연 등의 검토를 거쳐 2개월 이내에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법제처 81 국가법령정보센터

- ⑤ 청장은 기술이전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항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표준조건의 수정 등의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동일국가로 동일 품목을 반복하여 수출하는 경우
- 2. 양산사업 수행을 위해 동일 기술을 반복하여 이전하는 경우
- 3. 연구개발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시제업체 등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 확보한 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하고 자 하는 경우
- 4. 기술이전(실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 5. 기술 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일반에 공개된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 ⑥ 제4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이전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기술이전 시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 2.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보유기관 및 관련 기업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기술이전 신청업체의 사업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 ⑦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기술보유기관 및 제9항의 전담기관은 기술이전 범위 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이전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이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 확보된 국가 소유의 개발 성과물을 직접 활용하려는 내용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활용 내역을 매분기 시작 후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이전 신청 및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 1. 해당 연구개발사업 개요
- 2. 개발성과물의 유형 및 내용
- 3. 개발성과물의 활용 기간, 목적 및 계획
- 4. 기타 개발성과물의 활용과 관련한 사항
- ⑨ 「혁신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국과연에 소속된 전담기관 및 국기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가 소유하는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175조부터 제177조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청장은 반기별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1. 국과연 신속원 :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 2.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 제175조의2(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 ①「혁신법」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허락 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자에게 제175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공동소유자가 실시권을 허락하려는 경우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내에 다른 공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법제처 82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거나 또는 통지를 받고 실시권을 허락하려는 업체 등 공동소유자는 통지를 한 날 또는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75조제2항 각호에 대한 검토결과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청을 받은 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175조제4항의 관계기관 등 검토를 거쳐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동의 요청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공동소유자가 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는 즉시 구체적인 사유를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청장은「혁신법 시행령」제16조제5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권 허락을 해당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76조(기술이전계약 및 조치사항) ①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175조에 따라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연구기관등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술이전계약서에는 이전되는 기술의 범위 및 내용, 기술료・기술료 지급방법 및 납입시기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기술이전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혁신법 시행령」제16조제4항에 의하여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승인을 얻은 기술을 이전하고자 할경우에 기술료 부과금액·납부시기·방법,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연구기관등의 준수사항 및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술이전계약서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기술을 이전받은 연구기관등은 청장의 승인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할 수 없다.
 - 2. 연구기관등이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해 이전받은 기술을 청장의 승인없이 민수품(수출품을 포함한다) 생산에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기술료를 기술보유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3. 연구기관등은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 권에 대한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방기술보호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 계약서에는 연구기관등의 이전기술 활용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5. 계약 후 연구기관등은 기술보유기관의 장이 요청 시 기술활용 현황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제출하여 야 한다.
 - 6. 연구기관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전받은 기술을 제4호의 활용계획에 따라 활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부 기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7. 기술을 이전받은 연구기관등은 계약종료 후 1개월 이내 이전받은 기술정보의 파기 또는 반환 결과를 기술보유 기관의 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기술정보를 계속 활용할 권한을 보유한 경우는 계약 종료 전 1개월까지 그 사유를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정보 활용과 관련한 관리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한다. 기술정보 보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기술을 이전받은 연구기관등은 종료 1개월 이내에 이전받은 기술정보의 파기 또는 반환 결과를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기술보유기관은 기술을 일반업체 및 기관에 이전할 때에는 비밀사항을 제거하거나 기술내용의 일부를 개조하여 이전하여야 하며, 기술이전에 관한 자료를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법제처 83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절충교역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예비승인 및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⑤「혁신법」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은 각 공유자를 포함한 공동명의로 실시권을 신청한 자와 체결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혁신법」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가안보상 필요에 의해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기술이전 계약은 청장이 실시권을 신청한 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제177조(징수 기술료의 사용 및 실적보고) ① 기술보유기관의 장이 보유한 기술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각 군과 청장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는 「혁신법」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1. 연구개발에의 재투자
 - 2.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 3. 참여연구원이나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전략・비닉개발, 시험시설・장비 운용자 등 기술보유기관의 연구역 량강화에 기여한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보상금
 - 4. 해당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운영경비
 - 5. 수출을 위한 방산물자등의 개조 개발에의 재투자
 - ②「혁신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술보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의 40% 이상은 제 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는 기술보유기관의 자체연구과제 수행 또는 인프라 보강을 위해 사용한다.
 - ④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의 적용대상, 범위 및 소요비용 등을 정하기 위하여 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한다.
 - ⑤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결과, 사용실적 및 사용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되는 기술료가 출연금 등과 중복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검토한다.
 - ⑥ 청장은 기술보유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⑦ 운영지원과장은 방위사업청으로 납부되거나 납부 의뢰를 받은 기술료를 국고 세입 조치한다.
- 제178조(국제기술협력 대상 기술정보관리) ① 외국정부 또는 외국업체 · 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기술협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을 국제공동연구개발하는 사업
 - 2. 국제 군사기술협력 관련 위원회 활동 및 기관간 상호 방문활동
 - 3. 해외 주재원 및 과학기술자 파견을 통한 군사기술협력 관련 활동
 - 4. 기타 외국과의 군사기술 관련 자료교환 활동 등
 - ② 청(소속기관 포함), 국과연, 국기연 및 신속원은 국제군사기술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활용되도록 노력하여 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법제처 84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업무소관기관은 획득한 각종 기술자료를 매년 6월 및 12월 또는 수시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획득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보호국 및 국기연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제출 대상은 상호방문, 공동연구, 자료교환 및 군사기술 관련 외국파견 등을 통해 획득한 각종 군사 기술자료 전반을 포함한다.
- 2. 국기연은 업무소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자체 수집한 각종 군사 기술자료를 매년 1월 및 7월에 종합·분석 하여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통보한다.
- 3. 업무소관기관은 추진 중인 국제기술협력에 대해 협력내용, 추진경과 및 성과, 주요현안, 향후 일정 등이 포함 된 국제기술협력 추진현황을 매년 6월 및 12월에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통보한다.

제2절 방위산업육성

- 제179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작성원칙)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국방전략서,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이 장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작성하고 필요 시 1년 단위로이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방위산업육성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2. 방위산업 생산설비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 3.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및 구매에 관한 사항
 - 4. 방산물자의 국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 5. 방산물자의 생산능력 판단에 관한 사항
 - 6. 방위산업 관련 인력의 개발 및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 7.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청장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방위사업정책국, 국방기술보호국, 사업본부, 국과연, 국기연및 신속원 등 관련 부서 및 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0조(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 및 운반허가, 폐기허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및「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를 따른다.

제181조 <삭 제>

제181조의2 <삭 제>

제182조(방산물자수출 성능시험 지원) 국제협력관은 방산물자 등의 수출 구매국에서 시험평가를 요구하거나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 성능시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2조의2(신기술 공모) ① 첨단기술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신기술에 대한 공모를 통해 민간(산학연 등)의 기술수준을 확인하는 신기술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 1. 국가 안보 현안 및 사업 추진 간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안 마련 또는 해결이 필요한 경우
 - 2. 민간의 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는 사업의 과제 발굴 및 기획에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효율적인 소요기획 및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신기술 공모를 실시할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합참, 소요군, 통합사업관리팀, 국과연, 국기연 등(이하 이 조에서 '공모요청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모를 요청받아 인터넷 등의 공개된 매체를 통해 공모한다.
 - ③ 공모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공모를 요청하는 경우 공모 배경, 공모가 필요한 기술 또는 문제상황, 공모 결과 활용방안을 구체화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국과연, 신속원, 국기연 등에 공모된 기술의 유용성, 해결방안 적합성, 사업 적용 방안 등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제4항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공모된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방위산업진흥국, 국방기술보호국, 국과연, 신속원, 국기연에 통보하여 민군협력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방산 육성지원사업, 신속시범사업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제4항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공모요청기관에 공모 결과 활용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모에 참여한 기관에 사업화 등 후속조치 방안을 안내할 수 있다.

제3절 방산기술보호 및 수출입허가 등

제183조(보호대상 품목 및 기술의 식별·관리)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계약부서장은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 시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수출승인품목을 포함한 보호대상 품목과 기술을 식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4조 <삭 제>

- 제185조(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인적, 물리적 보호 강화) ①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계약부서장은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 과정에서 방산기술보호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인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기존의 인원 및 시설 보안과 관련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부서는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86조(방산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 및 위반 시 조치 등)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방산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산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 또는 감사관에 조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법제처 86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87조(방산기술보호 약정체결 관련조치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산기술보호관련 기관 간 약정체결 필요 시국·영문 문안을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검토의뢰하여 작성하고, 법무검토를 통해 확정 후 체결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산기술보호관련 기관간 약정 체결한 후 국방기술보호국장과 관련정보를 공유한다.

제188조 <삭 제>

제189조 <삭 제>

제190조 <삭 제>

제191조 <삭 제>

제192조 <삭 제>

제192조의2 <삭 제>

제193조 <삭 제>

제194조 <삭 제>

제195조 <삭 제>

제196조 <삭 제>

제197조 <삭 제>

제198조 <삭 제>

제199조 <삭 제>

제200조 <삭 제>

제200조의2 <삭 제>

제201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864호,2024.7.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미한 성능개량 소요 관련 소요검토팀 구성·운영에 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에 접수한 경미한 성능개량 소요제기 건부터 적용한다.

- 제3조(목표비용관리 적용대상 추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 기준 사업추진기 본전략을 수립한 사업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사업중간점검 항목에 목표양산단가 추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5조(긴급소요사업 관련 적용례) 제136조부터 제143조까지의 신설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접수한 긴급소요 건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88 국가법령정보센터